

工場새마을運動의 團體法的 研究

金 致 善*

머 리 말

1973年末 500個 示範工場이 母體가 되어 새마을運動의 一環으로 展開되어온 工場새마을運動은 1979年中盤에 들어와서는 10人이상의 全工場 15,000個所가 이에 參與하여 勞使協助, 勤勞福祉, 國際競爭力提高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¹⁾ 反面 副作用도 없지 않았다. 특히 1979年 8月の Y·H事件과 1980年 4月の 舍北炭座의 勞動事件 등은 앞으로 勞使關係의 再整備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本稿는 앞으로 工場새마을運動은 새로운 角度에서 再整備할 時期가 왔다고 보고 그에 適用할 수 있는 法制化를 研究하는 데 그 目的을 두었다.

I. 趣 旨

1979年 12月 9日 全國새마을指導者大會에서 朴大統領은 「工場새마을運動이란 한마디로 企業人和 勤勞者가 서로 믿고 도우며, 한 마음으로 일해서 다함께 잘 살기 위한 運動입니다. 다시 말해서 企業人이 從業員을 家族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 企業이라는 마음이 우러나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며, 또 여기에서 나오는 利益을 다시 從業員의 處遇와 福祉向上에 還元할 때 企業人和 從業員間에 總和가 이루어지고 能率과 生産性이 提高되고 그 企業은 더욱 展開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運動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特有的 勞使協助運動으로서 國力培養을 加速化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言及함으로써 工場새마을運動의 目的을 밝혔다⁽²⁾

II. 史的脈絡

工場새마을運動은 그 理念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土分斷과 東西冷戰속에서 우리의 살길이 우선 무엇보다도 經濟開發에 있다고 보고 工場地帶에서의 勞使紛爭을 避하고 勞使가 서로 믿고 協力하여 産業平和속에서 經濟開發計劃을 과감히 遂行하기 위하여 展開한 하나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1)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工場새마을運動推進現況(1979. 4. 17)참조.

(2)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前掲資料 참조.

下向的 勞使行動哲學이며 一大躍進運動이라고 하였다.⁽³⁾ 이것은 近世에 들어와 東學革命, 3.1運動 그리고 4.19 革命이 모두 物質的 基盤이 약하여 昇華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음에 비추어 民生이란 면에서 하나의 「잘살기」運動이라고도 말하여 왔다.

工場새마을運動은 우리 固有의 勞使協助運動이라고 그 目的에서 밝혔거니와 우리 歷史上 어려운 時期에 이러한 國民啓化와 民生救濟를 위한 運動은 地域的이든 全國的이든 꾸준히 그 脈絡을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新羅時代의 두레, 高麗時代의 寶, 李朝時代의 鄉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民生·啓化運動은 그 時代의 私的 交換關係이외에 마을共同體를 기반으로 地域自治에 의하여 實行되었고 그 이니시아티브는 대개 官이 쥐고 下向的으로 作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運動의 管理者나 官吏들의 발호도 없지 않아 그때 그때 自治의인 꽃을 못 피우고 애석하게도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一定한 脈絡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져왔다는데 우리 民族의 固有性이 담겨져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우선 工場새마을運動의 社會的·政策的 位置를 찾기 위하여 이와 비슷한 共同體의 史的 脈絡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新羅時代의 두레

古代 우리 民族의 法感情을 代表했던 蕪塗神話(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천당으로 올라가고 악한 일을 하면 죽어서 저옥으로 떨어진다는 神話)는 檀君神話의 本體가 되고 桓雄思想으로 發展하여 급기야 新羅時代의 和伯思想으로 이어지고 이 和伯思想에서 다시 村落共同體로서의 團體思想을 낳게 되었으니 그것이 다름아닌 두레였던 것이다. 그리고 農耕社會의 協同生産의 代表的인 것이 新羅初期의 두레삼(協同續麻)였다.⁽⁴⁾ 우리나라 歷史上 團體性을 表示한 것으로는 「두레」「寶」「徒」「投」「藪」「社」「會」「모꼬지」「회취」「대일이」「내기」 등의 表現이 있으나 특히 「두레」는 이의 代表的인 表現인바 이것은 「마을」이란 成人男子集團社會에서 分化된 人爲的인 協同體로서 원래는 Circle 내지 結社(Vereinigung)를 意味하는 말이였다.⁽⁵⁾ 즉 삼(麻)을 協同하여 삼는(續麻) 것을 두레삼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특히 女人들이 一團이 되어서 일년동안 길삼을 함께 삼아 그 實績을 比較하고 8月 「한가위」에 近쪽의 한 女人이 哀調된 嘆辭으로 「회소 회소」하고 춤을 추도록 한 바 新羅 第3代王인 儒理王 9月(西紀 32年)에 길삼하는 아낙네들을 두패로 갈라 길삼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이였다.⁽⁶⁾

길삼을 作業內容으로 한 두레삼은 女性들의 協同生産活動을 고취하여 作業結果를 경쟁적

(3)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前掲書 참조.

(4) 金裕赫, 우리나라 地域社會運動에 관한 時系的 考察, 檀國大學校 論文集, 第9輯(1975 12月) p. 16.

(5)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 1974, p. 94.

(6) 王, 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册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續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還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戲皆作謂之嘉俳,

으로 評價하고 成績이 우수한 集團을 위한 酒食을 배풀어 勝者를 祝福하며 앞으로의 再生産의 活力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共同娛樂을 벌여온 것이 오늘의 「한가위」의 始源임은 너무나 잘 알려진 事實이다.

이 두레의 實證法的側面을 보면 그 組織體의 長을 가리켜 座上 또는 領座라 불렀고 業務를 맡아보는 幹事를 公員이라 불렀으며 組織單位마다 두레旗를 갖고 있었음을 볼때, 일찍부터 우리 祖上들의 우수한 組織力을 엿볼 수 있다.

新羅 第49代王인 憲康王時代に 이르러서는 모든 民가가 기와로서 지붕을 잇고 숯불로 밥을 지어먹는 높은 文化水準을 이루고 있었음도 이와 같이 우수한 地域共同體의 勤儉節約과 協同團結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레」라고 하는 協同作業에 의하여 收入된 資金은 出役量에 따라 配分하되 共同으로 積立한 資金은 그것을 地域社會單位의 共同資産으로 管理增殖하며 地域社會의 公共事業을 펴나갔다고 하니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合名會社 및 合資會社 그리고 각종 消費協同組合의 法形態를 방불케 하는 地域共同體의 自主法制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2) 高麗時代의 實

高麗時代의 社會共同體의 側面은 이를 두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하나는 社會賑恤政策과 倉庫制度이며 다른 하나는 이에 더잡아 發展한 寶思想이다.

첫째-賑恤政策은 新羅時代에도 洪水나 災旱등 天災之變에 대처하기 위한 賑恤制度를 엿볼 수 있었으나 특히 高麗時代에 들어와서 그것이 對民政策으로서 發展한 바, ① 閔中王二年 夏五月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 ② 慕本王二年 夏四月 隕霜雨雹 秋八月 發使賑恤國內饑民 ③ 大祖大王五十六年 春大旱 至夏 赤地 民饑 王發使賑恤 ④ 太祖大王六十六年 秋月 蝗雹害穀 八月命有司舉賢良孝順 問鰥寡孤獨及老不能自存者 給衣食 ⑤ 故國川王十六年 秋七月 墮霜殺穀 民飢 開倉賑給 ⑥ 西川王四年 秋七月丁酉朔 日有食之 民饑 發倉賑之 ⑦ 故國壞王六年 春 餓人相食 王發倉賑給 등의 諸施策이 그 例이다. 天然災害로 인한 救恤政策을 배풀기 위하여 倉庫制度가 상당히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記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賑恤은 米의 賜給에 그치지 아니하고 五穀種子도 포함했고⁽⁷⁾ 그것이 無償·有償을 겸하여 行하여졌으며 無償일지라도 對民政策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封建的專制國家에서 個人과 家族을 共同體內에 결속시켜 團體性을 維持하였다. 이때의 이 人的團體 또는 結合體는 과거의 共同組織의 概念이 支配의이었던 時代에서 점차 自治機能을 밀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生産活動을 展開하는 共同體로 發展하였다. 이것은 따라서 原始時代와는 달라서 契의 成立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共同體였던 것이다.

둘째, 이러한 社會救恤을 밀바탕으로 하여 維持되어온 人的結合體의에 營利的 共同體로서

(7) 金三守, 前揭書, p. 173.

는 寶의 機能을 들 수 있다. (8) 寶는 처음 佛教의 三寶(佛寶, 法寶, 僧寶)를 만들어 佛教敎理를 具現하고 佛堂의 建設, 寺院에서 收支를 위한 基本財産이었던 바, 寺院을 中心으로 한 僧團의 俗世에 대한 敎化敎濟를 위한 團體事業에 의해서 支持되었으며 이러한 것이 專制國家의 支配條件을 위한 高利的 寶로 變遷을 하면서 前者는 契에 後者는 封建國家의 一般的 支配體制를 支持하는 高利的 寶로 되어 寺院에서의 基本形態로 부터 高麗時代의 公的 機關으로 轉身하고 一般的으로 民間에서 殖利性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共同體의 存在를 必然케 하였던 것이다.

이 寶는 따라서 契成立의 先行形態로 보는데, 그 理由는 ① 寶의 歷史의 두가지 機能을 契가 지녔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前者 즉 순전히 實物을 資本삼아 殖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을(實物殖利)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② 對立의 關係를 自己轉換의 契機로 삼은 위 두가지의 寶(하나는 民間 또는 寺院集團 다른 하나는 官制的特權의 組織)가 契機能의 成立에 대해서 前者는 個別的 先行으로서 後者는 直接的, 現實의 社會條件을 形成함으로써 高麗時代의 새로운 共同體 즉 民間의 結合關係를 造成하였다. 따라서 契를 形成케 한 歷史의 意義를 볼때 寶는 大體로 契의 先行形態로 볼 수 밖에 없다. (9) 어느 경우이든 그것은 高麗時代의 人的 結合體를 自治的 基盤으로 운영하여온 共同體의 要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鄉 約

鄉約은 文字 그대로 鄉人들간의 約束이며 盟誓인 것이다. (10) 이것은 同鄉之人이 서로 깨우쳐가며 살자는 約束인 것이다.

鄉約制度는 中國의 封建의 내지 自治의 敎化制度로서 中國鄉村의 性格 즉 王國中의 小王國의 自治制로서, 한편 三皇五帝 때의 理想的 社會狀態를 基底로 한 統治思想으로서 運營面에서는 自治의 一面과 官治의 一面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밑바탕에는 自治의 機能이 一貫한 것이다. (11)

가) 豐沛鄉約

李朝時代를 접어들면서 佛教는 퇴색하고 儒敎가 득세하게 되자, 李太祖는 그의 生長地인 豐沛鄉(咸南咸興郡)에 처음으로 復古의인 中國의 豐沛鄉約을 太祖 7年 4月(西紀 1393年)에 實施토록 했다. 그는 鄉憲 41個條를 親히 制定, 이를 그 地域社會에 實施토록 했는데 크게 6大綱目으로 나누어지는 바, ① 永爲削籍事(品行不貞 또는 家道毀損者로 鄉籍에서 削除), ② 永爲棄身事(爭訟을 즐기거나 禮道를 遵行치 않는 者의 處罰), ③ 限己身損徒事(犯罪, 害俗, 作弊者의 處罰) ④ 當身不用而勿棄子孫事(處身이 放慢한 者의 處罰), ⑤ 暮年損徒而元日招辭懲罪役受宴

(8) 寶의 考察은 言語學的으로 「寶者方言也」와 「存本取利於久遠」의 句節에서 처음 行해졌다(朝鮮 封建社會經濟史).

(9) 金三守, 前揭書 p. 228.

(10) 金裕赫, 前揭書, p. 7.

(11) 金三守, 前揭書, p. 118.

赦身事, 少年者未許座而罰四十度後許本座事(社會共同生活의 格律을 毀損하거나 相助, 相救, 相扶 하지 않는 類의 行爲規制), ⑥ 附則(改過遷善者의 寬容) 등이 그것이다.

이 鄉憲의 實施를 위하여 그후 各處에 留鄉所를 두게 되었다. 이 留鄉所는 郡縣의 守丞을 補佐하는 하나의 地方自治機構이 있으나⁽¹²⁾ 그 運營이 目的대로 되지 않아 民弊가 심하여 社會問題로 되었던 點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다.

나) 呂氏鄉約

中宗 12年 咸陽人 金仁範이 上疏하여 朱子學의 傳來와 함께 우리나라에 傳해졌던 呂氏鄉約을 우리나라에 導入하여 土俗化할 것을 請하였던 바 王은 이를 가상타고 생각하여 우선 諸臣에 命해서 美風良俗의 教化方策을 講究케 하고 同13年 知中樞府事 金慕齊(이름 金安國)는 呂氏鄉約撰註를 諺文으로 번역하여 各道에 頒布하는 課業을 遂行하였던 것이다.⁽¹³⁾

金仁範上疏, 請以藍田呂氏鄉約, 化民成俗, 啓下禮曹, 禮曹報政府云, 小學正俗, 已令多數 印出, 廣布中外, 呂氏鄉約, 是小學中一事, 不必別令舉行, 請勿舉行云, 政府啓目乃日, 呂氏 鄉約, 雖載小學, 若不曉諭, 別令舉行則視爲尋常徒爲文具, 令各道監司, 廣布何如, 上, 允 之,⁽¹⁴⁾

이 呂氏鄉約은 中國 藍田땅에 살고 있던 呂氏에 의하여 創案되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呂氏鄉約이라고 불렀는데 그 內容은 ① 德業相勸 ② 過失相規 ③ 禮俗相交 ④ 患難相恤의 네가지이다.

이 呂氏鄉約도 앞서 말한 豐沛鄉約과 大同小異하고 모두 德風과 美俗을 길러 鄉民을 教化한다는 理念的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다) 退溪의 禮安鄉約

退溪 李滉先生은 1556年 12月에 禮安에서 鄉約條를 制定한 바, 이는 入道의 大本인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해 나갈 곳이 鄉黨이란 點을 強調하고, 만일 孝悌忠信의 道를 遵行하지 아니 하고 禮義廉恥를 저바림이 날로 심해져 갈 경우 夷狄禽獸와 마찬가지로 될 뿐 아니라 이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廢民이 되고 말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罰則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특히 鄉立約條에서는 約條內容의 輕重을 極罰條와 中罰條와 下罰條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犯約의 動機와 原因 및 情狀을 參酌하여 細分化하고 있다.

그는 特히 「우리 고을은 비록 땅은 작으나 本來 文獻의 國家로 이름을 낸 儒賢이 많이 나서 王朝에 빛나는 者가 代代로 자취를 이어왔으므로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고 본떠서 고을의 風俗이 매우 아름다웠다」(吾鄉, 雖壤地褊小, 素號文獻之邦, 儒生輩出, 羽儀王朝, 前後接踵,

(12) 金裕赫, 前揭書, p. 9.

(13) 朴德培, 前揭書, p. 43.

(14) 金裕赫, 前揭書, p. 10.

觀感薰陶, 鄉風最美)고 함으로써 自主的·地域的 共同體法을 만들었던 것이다.

라) 栗谷의 鄉約

栗谷 李珥先生은 國家가 處해 있는 現實的 狀況을 銳利하게 直視하고 民衆의 願望이 무엇인가를 痛測하면서 疲廢되어가는 民俗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焦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¹⁵⁾ 그 是正策을 과감히 上疏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니와 鄉民을 自治的으로 教化하기 위하여 여러 고을에서 活躍한 바, 많은 鄉約을 제정하여 실시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① 坡州鄉約 ② 西原鄉約 ③ 石潭鄉約 ④ 海州一鄉約束 ⑤ 社會契約束 등인 바, 그 중 특히 社會教化部門을 보면 坡州鄉約 중 鄉約의 權與條 ㉑ 出入相友 ㉒ 守望相助 ㉓ 疾病相扶이 있고 西原鄉約에서는 能救人患難이 있고 특히, 社倉契約束의 德業相勸條에서는 富者의 謙양과 扶助心을 가르키고 患難相恤條에서는 社會問題, 疾病問題, 貧困問題등의 해결을 위한 相互扶助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柳馨遠의 鄉約

孝宗時 實學派學者중의 한사람인 柳馨遠은 實事求是를 重視하고 自覺的·重農思想을 富國強兵策의 國策으로 할것을 주장하여 이름을 남겼거니와 그의 鄉約도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로 되어 있으나 특히 患難相恤條에 있어서는 盜賊, 疾病, 死喪, 孤弱, 誣枉, 貧乏를 들고 있다.

바) 安鼎福의 鄉社法

李朝末 肅宗時의 安鼎福(1712~1791)은 鄉社法을 제정하여 그것을 自治的으로 실시하였는바, 그는 鄉社制를 바탕으로한 地域社會運動이 制度的으로 잘 뒷바침이 되어야 經濟生活問題가 解決됨은 물론 社會教育이 實施될 수 있고, 風俗을 同化할 수 있고, 爭訟을 줄일 수 있고 患難, 盜事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同鄉約法の 構成은 ① 鄉社之籍 ② 鄉社之政 ③ 鄉社之教 ④ 鄉社之禮, ⑤ 鄉社之養 ⑥ 鄉社之備 ⑦ 鄉社之禁 등으로 政治, 經濟, 教育, 治安, 國防, 社會 등에 걸쳐 國民自強運動을 펴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¹⁶⁾

이상 評述한 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레, 寶, 鄉約 등은 모두가 몽매한 백성을 깨우치고 生業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대개 그 시대의 德望家나 官主導下에 着手되었으나 그 實施는 어디까지나 地方(地域)自治로 運營되었음을 볼 수 있다. 鄉約을 가리켜 「中國에서 傳來한 것으로서 復古思想의 產物이나 運營面에 있어서는 自治機能으로서 一貫하고 있다」⁽¹⁷⁾고 하는 立場이 없는 바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이나 退溪가 呂氏鄉約의 가장 眞髓

(15) 金裕赫, 前揭書, p. 14.

(16) 이상 金裕赫, 上揭書 引用

(17) 金三守, 前揭書, p. 188.

라고 하는 中國類의 德業相勸을 別것 아니라고 한 것이나, 栗谷이 朱子의 소위 理氣決二物을 배척하고 氣發理棄之論을 주장한 것이라거나 또 最近에 들어와 日本의 몇몇 學者들이 鄉約을 中國의 것이라고 한데 대하여 柳洪烈교수가 이를 排斥하고 鄉約은 우리나라의 일이 담겨져 있는 地域共同體의 古有한 自治法임을 몸소 論證하고 있는 것은⁽¹⁸⁾ 우리 民族에게 地域社會의 協同運動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時代的 表明이 오늘날 새마을運動임도 否定할 수 없다.⁽¹⁹⁾

Ⅲ. 現況과 問題點

이 工場새마을運動은 1970年 4月 22日 釜山에서 개최된 地方長官會議時 朴正熙大統領이 처음 提唱되었고 1973年 都市새마을運動의 一環으로 시작, 1977年 3月 都市새마을運動으로부터 分離하여 推進하여 1979年 4月현재 適用對象業種을 주로 製造業, 鑛業에 두고 業體數 12,000個에 걸쳐 展開되어 왔다.⁽²⁰⁾

1979年度 工場새마을運動 推進基本方向은 韓國의 勞使協調風土造成(生産의 勞使協助), 國際競爭力의 強化, 全企業人 및 勤勞者의 共同參與, 總和體制의 構築에 두었다.⁽²¹⁾

1979年 工場새마을 運動의 推進計劃은 業界가 할 일과 政府가 할 일로 區分하고 있는 바 이중 業界가 할 일은 또다시 企業人이 해야할 일과 勤勞者가 해야할 일 그리고 勞使共同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바, 이를 項別로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企 業 人— 企業經營合理化 努力의 倍加

- 原價節減要因發掘의 極大化
- 當分間 經營安定에 注力
- 生活속의 勤儉節約實踐의 倍加
 - 企業內 勤儉節約의 率先垂範
 - 家族의 儉素한 生活勸行
- 從業員生計維持에 대한 最大限의 關心과 配慮
 - 稼動率維持를 위한 努力(新規輸出開拓 등)
- 企業生存을 위한 從業員의 自發的 努力의 最大限支援
 - 從業員과의 對話擴大(새마을協議會, 勞使協議會, 朝會 등)
 - 分任組活動, 提案活動支援
- 競爭力強化를 위한 不斷한 努力(施設改善, 技術革新 등)

勤勞者— 우리經濟와 내工場의 實情理解

- 內 工場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認識 : 企業經費(人件포함)負擔能力에 限界가 있음을 감

(18) 柳洪烈, 震禮學 第九卷 p.86이하

(19) 金裕赫교수는 새마을運動을 續史의側面에서 보고 있다.

(20)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前揭資料 참조.

(21)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前揭資料 참조.

안하여 勤勞條件에 대한 協調의 姿勢로 理解

—操業短縮 내지 稼動率低下時 賃金 勞動時間調整등으로 勤勞者全體의 共存을 위한 自發的 努力的 傾注

• 에너지物資節約, 品質向上, 工程改善을 위한 創意와 努力.

—새마을 分任活動 積極化 參與

• 家庭과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勤儉節約

勞使共同— 새마을推進協議會, 勞使協議會開催

—企業의 어려움을 對話로 通해 理解

—企業과 勤勞者全體의 生存對策을 共同으로 模索

• 안쓰는 物件交換機會 마련

• 貯蓄增大

• 共同購買事業擴大

政 府— 잘하는 工場

• 政府의 各種支援施策 運營時 實質적으로 遇待하여 惠澤이 가도록 함—계속적인 努力을 誘導

• 안하는 工場—政府支援施策의 優先順位檢討時 考慮함—企業人의 自覺과 奮發促求

從業員福祉의 內實化—

• 質의 惠澤을 주는 福祉厚生對策

—施設面—寄宿舍, 食堂, 賣店, 娛樂施設, 醫療施設, 教養施設

—制度面—處遇改善, 새마을金庫, 從業員持株制, 消費組合, 體育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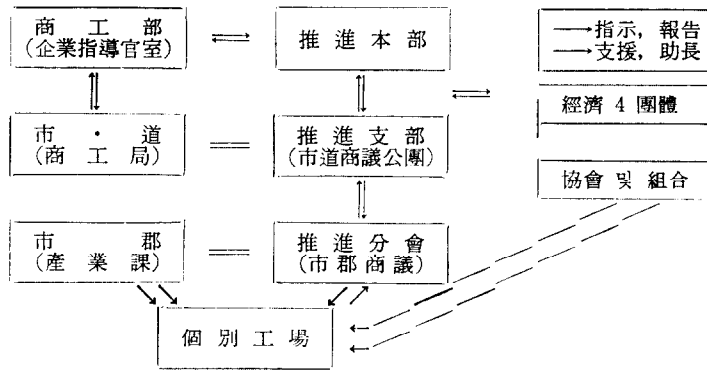
• 勤勞青少年就學獎勵⁽²²⁾

區分	78年			79年		
	學 校	學 級	學 生	學 校	學 級	學 生
夜間學校	59	170	9,274	100	290	17,000
附設學校	23	224	11,941	29	259	14,241
計	82	394	21,215	129	549	31,441

1. 推進組織

工場새마을運動은 政府레벨로서는 商工部, 使用者레벨로서는 商工會議所 勤勞者側으로서는 各企業의 工場새마을協議會라 볼 수 있으나 中央레벨로서는 商工부와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商工會議所)가 主管하여 왔다. 商工部에는 企業指導官室이 있어 各市, 道, 郡으로 示達되고 推進本部에는 새마을運動指導課가 있어 市, 道, 郡의 商工會議所에 示達하므로써 推進되었다. 勤勞者代表가 中央에서 政策反映을 위한 中央의 組織은 없었고 勞動組合이 消極的의 態度를 取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工場새마을運動은 政府와 使用者團體가 主管하여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22) 工場새마을運動推進本部, 前掲資料 참조.



2. 副作用

工場새마을運動은 農村새마을運動과는 달리 그 展開過程初부터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農村새마을運動은 各者 農土를 가지고 있는 農民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위 새마을 運動에 있어서 指導者原理(Führer Prinzip)가 제대로 適用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工場새마을運動은 이러한 農村共同體에 있어서와는 달라 勞使關係가 本源的으로 勤勞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工場規律이 또한 事實상 이 勤勞契約을 中心으로 維持되는 것이다. 工場에서 秩序破壞者는 勤勞契約에 의한 解雇로서 充分하다. 勞使間에는 共同體關係에 앞서 利害關係가 存立한다. 이러한 곳에 대한 政府主導下의 새마을運動의 推進은 結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강요와 사용자의 指示權남용을 갖어와 企業은 亡해도 企業人은 致富하는 이 이러니갈한 企業風土까지 갖어오게 되었다. 政府가 勞使對話를 권장하지만 그 理念的 뒤바침이 부족하여 勞使가 이를 지키는 일이 별로 없었으며 政府의 一方的인 指導만이 强行되는 가운데 勤勞者들의 소외 현상과 불만의 결과를 가져왔다. 政府主導下에 工場새마을運動의 評價가 行해졌지만 그것은 無拘束의인 企業人下에 從屬된 勤勞者를 說得하는 것에 集中되었던 것이다. 많은 勤勞者들이 政府와 企業主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도 지나친 政府主導下의 빛나간 工場새마을運動이후라고 보여진다.

1979年 9月 Y·H事件에 뒤이어 大統領指示에 따라 構成된 「産業體등에 대한 外部勢力浸透實態特別 調査班」이 作成한 結果報告書⁽²³⁾는 그동안 經濟開發을 위하여 企業의 育成과 國際競爭力強化단을 主眼點에 두었을 뿐 工場새마을運動을 被象的으로 運營함으로써 勤勞者問題를 도의시킨 結果였다. 여기에는 勞使自治를 도의시킨 官主導下의 工場새마을運動이 많은 無理를 빚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教訓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Y·H事件調查報告書가 나온후 政府高位當局者는 「急速한 産業化過程에서 派生되는 社會經濟的諸問題를 解決해 나가는데 있어서 잠시도 우리가 처해있는 冷嚴한 內外的 與件을

(23) 大統領指示下의 特別調査班, 産業體 및 農村社會에 대한 外部勢力 浸透實態調査報告書, 1979. 9.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의 憲政秩序와 法的 테두리안에서 透徹한 遵法精神을 가지고 우리 實情에 맞는 改善案을 진지하게 摸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政府關係部處는 產業體에 비록 一部나마 外部勢力이 浸透할 수 있었던 要因을 스스로 分析하여 이를 補完하기 위한 行政措置를 講究하고 農協의 機能과 一線農政을 더욱 合理化하여 勤勞者나 農民의 不滿要因을 보다 效果的으로 解消할 수 있도록 方案을 積極講究해야 할 것」이라고⁽²⁴⁾ 言及하여 勞動政策의 새로운 方向과 官主導型 工場새마을運動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轉換을 암시하였다.

3. 工場새마을運動의 自律化

工場새마을運動은 政府後援不에 勞使當事者主義에 立脚한 勞使協議會가 主體가 되어 自主적으로 運營해야 한다는 立場은 學界의 오래된 主張이 있으며 또 그러한 方向에서 研究되어 왔지만⁽²⁵⁾ 특히 勞動界에서는 1979年 9月 28日 政府에 대한 重要建議案을 내었는 바 그중 韓國勞總의 「勞使協議會法의 制定」과 「勤勞者協同組合法(假稱)의 制定」에 대한 建議書는 工場새마을運動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 注目할 만하다.⁽²⁶⁾ 同 聯盟의 勞使協議會法制定建議書는 勞使關係의 近代化를 위하여 勞使關係는 어디까지나 自律性和 對等성이 基礎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勞使協議會法을 制定하여 줄 것을 建議했다. 同 建議書는 勤勞者와 使用者가 相互信賴와 協助를 바탕으로 經營의 民主化와 生産性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勞使協議會法을 제정하고 團體交涉權을 復原시킬 것을 建議했다.

同 聯盟은 이외에 勞使自主組織體로서 勤勞者協同組合法(假稱)을 制定하여 줄 것을 建議했다. 同 建議書는 「現在 勞總傘下의 支部, 分會에서는 信用協同組合, 共濟組合, 새마을金庫, 職場金庫, 相助會, 共濟會 등이 普及되고 있으나 아무런 法的 根據도 없는 非公式의인 活動도 許多하여 運營過程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⁷⁾

이와같은 勞總의 建議는 앞으로 政治發展과 함께 充分히 政策에 反映될 것으로 보거나와 이러한 法들이 民主적으로 制定되어 工場새마을運動을 自治的이고도 協力的 方向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工場새마을運動은 그 趣旨 自體는 나무랄데 없는 만큼 그것을 계승하여 이제 새로운 方向에서 再定立함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固有한 勞使關係의 確立에 기여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制度化되어야 할 것인가를 研究한다.

(24) 青瓦臺代辯人發表, 1979. 9. 14(指示事項)

(25) 勞使協議會에 대한 研究資料는 金致善교수의 西獨의 經營協議會法의 번역, 西獨共同決定法의 번역, 西獨勤勞者共同決定法의 번역, 韓正鉉研究員의 프랑스의 企業改革에 관한 提案(物中心에서 人間中心으로)(서울大 法學) 등이 있음.

(26)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建議書, 1979. 8. 28.

(27)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建議書, 1979. 8. 28.

IV. 企業共同體

두레, 寶, 鄉約과 마찬가지로 工場새마을運動은 企業共同體를 基盤으로하여 展開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의 共同體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마을을 民會 集合所로 볼때는 그것이 마치 스라브 社會의 Mir, 英國 古代의 Folkmate와 같고 또 마을을 한 共產體로 볼때는 역시 스라브 社會의 Mir, 日蘭 社會의 Mark나 Allmende와 같다」라고한 所說이 있거니와⁽²⁸⁾ 共同體의 使用에는 그 말 자체에서 오는 危險도 적지아니하므로 工場새마을運動을 올바르게 推進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共同體概念을 明白히 할 것이 必要하다.⁽²⁹⁾

1. 共同體의 概念

원래 共同體란 말은 우리 固有語는 아니며 西歐語의 譯語에서 傳來된 것이다. Tönnies가 共同體를 Gemeinschaft와 Gesellschaft로 나눈 것은 너무나 유명하거니와 그 使用例는 매우 다양하다.

1) Gemeinde—共同體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表現이며 대개 土地所有와의 關係에 있어서 土地共同體 이와 關聯된 村落共同體에 뚜렷하다. 반드시 土地만에 極限된 것도 아니다. 例를들면 都市共同體(Stadtgemeinde), 人的 團體(Volksgemeinde), 隣人團體(Nachbarschaftsgemeinde), 家族 共同體(Hausgemeinde)등이 그것이다. 一般的으로 生産과 家計를 따로 하면서 서로 自然狀態에서의 한 地域單位를 일컫는다 하겠다.

2) Gemeinschaft—Grim에 의하면 이는 Gemeinde에 대한 從屬的 形態로서 Gemeinheit(共通·共同所有)와 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資格있는 市民(Bürger)의 分割되지 않은 土地위에만 關聯된다고 한다.

이러한 概念이외에 最近의 見解로서 Der Grosse Herber의 共同體概念이 있다. 그는 Gemeinde(共同體)는 첫째, 政治的 共同體, 둘째, 法的 地位를 基準으로 하며 이는 場所의으로 接近한 人間의 會聚生活의 Gemeinschaft라고 한다. 이는 오늘날 國家에 대응한 共同體地域의 모든 사람, 物에 관하여 支配의 權力이 分與되어 있는 公法上 整備된 法의 人格으로서 國家內에 合法的으로 組織化되기에 이른, 例를 들면 道路, 學校의 運營·維持등과 같은 것이 이에 該當한다고 했다. 그는 또 Gemeinschaft에 대하여는 그것이 本來 Genossenschaft 또는 Gemeinheit(=Allmende)이며 全 成員에 대한 法的 關係(土地共同體, 家族共同體)와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은 오히려 人間の 聯繫關係에 관한 表現으로 되었다고 한다.

最近 König는 Gemeinschaft(共同體)에 관하여 「具體的인 意味에 있어서 <Gemeinschaft>란 말은 本來 <全體의 成員이 共通으로 그 무엇을 가진 總有體>를 意味한다」(Im konkreten Sinne bedeutet das Wort Gemeinschaft ursprünglich die <Gesamtheit derer, die etwas zu

(28) 李丙燾, 「古代南堂考」 서울大論文集 第1輯(1954.3), p.7.

(29)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研究」(1974) p.40 이하를 참조.

gesamter Hand gemeinsam haben))고 했다. (30) 그는 나아가 「우리들에게 共同體는 社會的 組織으로서 즉 무엇보다도 그 組織을 통한 현저한 關係로 나타나며 모든 人間이 그 組織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가 가진 限界性和 相違性이 餘他的 類似한 諸 關係로부터 이 關係를 認識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Gemeinde의 存續과 그 社會=文化的 同一性에 관해서 決定的인 이 構造的 關係는 무수한 個別現象——즉 構造的 關係에 특수한 內容을 부여하는——으로부터 獨立의이며 거기서 表現되는 것은 關與者들이 그 共同體의 個體性에 대하여 조금도 疑惑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獨立의인 것으로는 共同的 움직임 가운데서도 社會的 組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個別的活動이 있으며 따라서 定住形態, 場所, 그 規模, 交感, 變動, 年令, 性別, 種族, 家庭의地位, 民族의血統, 言語, 宗教의所屬, 教育水準, 農村, 都市의 性格에 따른 그의 奉仕와 勤勞의地位를 수반하는 經濟的組織 등이다. 共同體의 社會的 組織의 認識을 위한 보다 중요한 것은 共同體內에 있어서 連絡, 通信組織과 團體形成이며, 社會的 統制와 內部的 軋轢이며, 權力階層 및 階級層이며 끝으로는 文化的 傳統性이라고 하였다. (31)

끝으로 F. Tönnies의 共同體概念을 들어 雜多한 共同體概念을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Tönnies는 그의 著 「共同社會와 利益社會」(Gemeinschaft und Gesellschaft—1887)에서 共同社會의 理論은 本來的 自然的 狀態로서의 사람들의 意志의 完全한 統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存在의 統一로서의 피(血)의 Gemeinschaft는 共同居住를 그 直接的인 表現으로 한 場所의 Gemeinschaft로 發展하는 바, 이 後者는 다시 目的과 意圖를 같이하는 단순한 共同作業·共同管理로서의 精神的 Gemeinschaft로 發展·分化하며, 이에 는 모두 共同的 關係라든가 共同的 關與 즉 共同的 所有가 一般的으로 結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利益社會의 理論에 입각하여 있는 者들은 本質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本質的으로 分離되어 있다고 보고, 사람들은 「Gemeinschaft에서는 모든 分離에도 불구하고 結合하여 나가지만, Gesellschaft에서는 모든 結合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分離하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갈라하였다. 그는 共同社會는 家族, 村落, 中世都市를 그 例로 들고 利益社會로서는 株式社會, 現代大都市, 國際的學會를 그 例로 들었다. (32) 그러나 個別的 集團이 위 두 類에 속할것인가는 반드시 明白치 않으며 變動的이란 점이다. 원래 農村은 大都市에 比하면 共同社會的이지만 都市文化의 影響을 받아 점차 利益社會化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또 現行의 家族은 共同社會的인 性質을 많이 띄고 있으나 차차 家族員內에 있어서도 利益社會的 傾向을 띄우고 있다. (33)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히 注意할 것은 全體의 時代를 통하여

(30) R.Koniz, Grnddformen der Gesellschaft: Die Gemeinde, 1958, S. 19. 金三守, 前揭書 p. 41.

(31) 金三守, 前揭書, pp. 41-42.

(32) 盧昌燮, 社會學, 1960, p. 117.

(33) 盧昌燮, 前揭書, 同項.

불때 이 두가지의 時代가 相互 對立하고 있고⁽³⁴⁾ 共同社會는 一體性, 慣習, 宗教로서의 社會意志가, 利益社會는 協約, 政治, 世論으로서의 社會意志가 특징적인 바, 모든 團結體가 모두 共同體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工場새마을運動은 前者에 속한다.

2. 自治共同體

Gemeinde(共同體)와 關聯하여 共同制(Gemeinwesen)를 들 수 있다. 이 Gemeinde는 Gemeinwesen은 基礎로 하고 있다. 가령 共同體가 하나의 生産共同組織일때, 그 共同體의 本質 把握은 거의 不可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同體는 原生的 集團性 내지 血族組織의 原始共同態와 어떤 形態로 그 根底에 있어서 連關을 갖는 社會關係이며 原始共同態란 原型에서 由來한 여러가지 特徵 즉 共同組織을 어떤 形態로 남기게되는 것인데 이 共同組織을 그 밑바탕에 갖고 있는 社會關係야말로 바로 共同制라고 한다.⁽³⁵⁾ 이러한 共同制는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의 自然發生的인 自治共同體이며 그것은 그 本質上 自然法的 制度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自然法은 바로 自治共同體의 創造의 行爲에 의하여 實證法的 領域으로 移行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왜냐하면 自治의 存在로서의 각 團結體가 理解를 基礎로 하여 成立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一體性을 基礎로 하고 있는 人間사이의 原初的·有機的 結合은 어느 段階에 도달하면 어떤 條件下에 自治共同體의 理念과 本質에까지 發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原始自治共同體는 점차 實證法的 傾向으로 發展하는 바, 이를 段階的으로 보면 ① 家父長的 自治共同體, ② 職業的 自治共同體 ③ 地方的 自治共同體 ④ 都市自治共同體 등으로 發展한다.⁽³⁶⁾ 여기서 共同體는 自治的機能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自治共同制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共同體는 반드시 Gemeinschaft에서 Gesellschaft를 指向하느냐 이 問題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하면 Otto von Gierke는 「나는 社會生活에 있어서 뚜렷이 훌륭한 意義를 갖고 있는 自然的인 結合體가 비록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文化的 혹은 統一體사이에 더 엄격한 區別을 할 것을 主張한다」라고 하여 Gemeinschaft와 Gesellschaft의 理論을 展開하여 그 時代區分을 하였다.⁽³⁷⁾ 그러나 그가 이러한 區分을 한 것은 社會의 밑바탕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自然發生的 結合體의 重要性를 강조한 것에서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Gemeinschaft와 Gesellschaft와의 時代區分은 不可能하고 우리 生活 自體속에 이 두가지 要素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4) 金三守, 前掲書, p. 43.

(35) 金三守, 前掲書, p. 46.

(36) 大塚久雄, 共同體의 基礎理論, 1955年, p. 18.

(37) Otto von Gierke, Das Wesen der menschlichen Verbande, 1902.

3. 工場새마을運動의 團體法理展開

1) Gierke의 團體法論

앞에서 共同體의 本質과 自治的屬性을 보았거니와 工場새마을運動은 勞使共同協助를 위한 것임으로 團體法에 의하여 規律된다. 그러면 法律上 團體法은 어떤 것들이나? 우리 人間生活은 Gierke의 말대로 個人生活과 團體生活이 있다고 한 바와 같이 法自體에 있어서도 個人法과 團體法의 區別이 있다. 個人法은 相互對立의 關係에 기초를 두고 主體의 不拘束性에서 出發하는 데 反하여 團體法은 意思把握者인 人間의 諸關係를 社會의 構成員으로 하여 社會의 全體(共同態)로서 다루는 것이다. Gierke는 「個人的 法律關係가 團體의 結合關係 속에 編入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社會法的인 것으로 變質되어 所有權, 物權, 債權의 特殊한 形態가 나타난다. 이때 團體人을 成立시키는 自由로운 意思行爲는 契約이 아니고 創設의 合同行爲라고 하여 團體가 法律上 個人과 同等 또는 그 이상의 人格者로 登場하는 特殊한 法領域을 團體法(Genossenschaftsrecht)이라」고 하였다.⁽³⁸⁾ 그는 또 「우리는 이 無形的인 單一體를 區別하여 하나는 分別의 作用에 의한 各人속에 自己自身の 存在를 갖는 單一體를 獨立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結合(Vereinigung)의 作用에 의하여 多數人속에 全一體를 나타내는 單一體를 獨立시킨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法律의 領域에 個體人으로서 또는 團體人으로서 나타나는 本體의 觀念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法人의 實在을 證明하였다.⁽³⁹⁾

그는 個人主義의 法律學은 利用과 힘(Nutzen und Macht)의 觀念下에 法의 本質과 目的을 파괴할 경향이 있다고 하고 形式的 概念法學은 定義와 眞實의 觀念사이 에 아무 區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論理的 結論과 內容의 把握이 同一視되어 있으며 이들은 形式的 正當에서 實質의 正當이 導出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形式的·概念的으로 制定되어 있는 議論 가운데에 終局的인 實質上的 決定의 完全한 基礎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은 形式的·分析的論理때문에 法의 思想의 實質의 內容을 把握할 可能性을 놓치고 法律學은 한낱 法律技術로 轉化되어 버렸다. 法律技術은 基本問題에 대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뿐 아니라 潑刺한 現實生活중에 潛在하여 살아 있는 法律理論을 科學的으로 認識하는 길을 遮斷하고 있다」고 비난했다.⁽⁴⁰⁾ 이리하여 그는 平生 동안 枯死하는 形式·幾何學的 技術의 圖式에 대신하여 史的素材로부터 찾아낸 實質的·實證的 論理를 가지고 研究하고 또 이로써 抽象的·利己的인 個人主義에 대치 시키려고 流轉的·道德的인 團體主義에 입각하여 研究하였다. 따라서 그의 法史論, 解釋論, 法理論 및 그의 研究의 中心의 對象은 모두 團體法論에 바탕을 두었다. 團體法 또는 團體法을 中心으로 展開한 理論이 즉 Gierke의 學說의 中心이며 그 要點이었다. 當時 Maitland는 「Gierke의 團體法論은 哲

(38) Otto von Gierke, Genossenschaftsrecht, 1913, Bd. I, S. 28.

(39) 朴德培, 鄉約의 勞動性的 性格, 서울師大, 1970, 別冊 p. 6.

(40) Otto von Gierke, Die historische Rechtsschule und die Germanisten, 1903, S. 33.

學의으로 眞實하며, 科學의으로 正當하며, 倫理的으로 올바른고 法典判例에 있어서 成法的으로 認定되고 있고 또 實質의으로도 便宜하다」고 극찬했다.⁽⁴¹⁾

참으로 Gierke의 學問의 中心點은 그의 團體法論인 바, 그의 法人論, 團體實在論, 그의 社會法論, 그의 權利能力 없는 社團論, 그의 合手的組合論 모두가 團體法構成의 一部이었다. 그는 특히 法은 國民精神의 產出物이라고 보고 法律과 道德과의 共同支配領域의 承認을 위해 싸운 것도 團體法의 구성 때문이었다. 그의 「全體에 있어서 單一性和 多數性과의 融合의 結合」(Die harmonischen Vereinigung der Einheit und Vielheit in der Gesamtheit)이란 團體法論의 要約은 團體法論의 指導概念이었다. Gierke의 法人論은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工場새마을運動의 求心體인 組合과 社會法論으로 넘어간다.

2) Gierke의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組合論

가) Gierke의 社團

工場새마을運動은 人的社團과 組合에 의하여 실천된다. Gierke는 「한 나라의 法律이 한 쪽에 있어서는 結社의 自由를 認定함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法人의 自由設立主義를 採擇하지 않고 特許主義, 免許主義, 準則主義란 制限主義를 採擇하여 一定한 法律要件을 具備한 團體에 限하여 法人格을 부여한다고 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社會生活上 獨立한 單一的團體로서 活動하고 있으나 아직 法人格을 取得하지 못한 組織體가 出現할 것은 當然하다. 또 法人은 一個組織體로서 行動하고 社會生活上의 一單位를 이룬다고 생각할 때에는 (法人實在說) 이와 같은 權利能力 없는 社團을 一個의 團體로서 取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當然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權利能力없는 社團도 法の 保護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또 그는 權利能力 없는 社團도 반드시 代表者와 議決機關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社團의 目標로서는 그 전체적인 內容으로 보아, 團體的으로 活動할 수 있는 內部的 組織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組合과 區別하였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組合이 아니라 오히려 그 本質에 비추어 본다면 法人에 가깝다. 組合이 債權關係인 동시에 身分의인 것이고 이런 점에서 直接的으로 物權法的인 效力을 갖는 關係인데 反하여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設立行爲는 사실은 合同行爲이다. 그러나 法典上은 合同行爲가 아니라 組合契約으로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契約은 身分法上的의 拘束關係를 定하는 一種의 結合行爲이다. 이의 定款·規約·規則 등은 法律上的의 意味에 있어서 定款은 아니고 契約上的의 規約의 集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契約에 의한 規約은 永續的인 共同意思로서 作用하며 귀속력에 의하여 自治法的인 形態를 取한다. 그 社員은 組織的 全體의 構成員이 아니라 단순한 組合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各者의 個別支配로 부터 分離된 共同的 支配力의 共同協力者들인 것이다.

(41) Maitland, Political theory of the middle age, p. 25.

(42) Otto von Gierke,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nach dem neuen Rechte, 1902.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機關은——사실은 機關이다——機關이 아니고 受任者 또는 代理人으로서 取扱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地位는 主體가 合手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結合體란 點에서 機關의 地位에 가깝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은 人格을 갖지 않고 따라서 또 權利·義務의 主體는 아니고 단지 法律關係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法律關係는 社員을 人的 單一體에 까지 結合시키고 있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財産은 組合財産인만큼 社團 그 自體에 歸屬하지 않고 각 社員의 共有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社團의 財産으로서 社員 자신의 財産과는 別個人 全體目的을 위하여 存在하는 獨立財産이며, 社員이 結合의 持分을 갖는 共同의 特別財産이다. 이 경우 그것은 法人의 所有財産과 類似하게 된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에는 대개 組合에 관한 規定이 적용되기 때문에 任意法規이며 따라서 定款에 의해서 組合規定을 團體法的 規定으로 變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社會法的 展開의 여지가 있다. 다만 權利能力 없는 社團에 대하여 特別한 法規가 存在하는 範圍內에서 組合法規의 適用이 없게 된다. 組織은 自由이나 그 效果는 內部生活에 있어서는 法人의 그것과 別差異가 없고 外部生活에 있어서는 法人과 本質的으로 다르다. 즉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業務執行社員은 別途의 規定이 없는 限 裁判上·裁判外에 있어서 全社員의 代理權을 갖는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財産은 組合의 財産으로 보며 社員의 合手的 所有에 屬하는 特別財産(Sondervermögen)이다. 따라서 각 社員은 全體로서의 財産 및 그의 各權利 위 에 持分을 가진다. 다만 각 社員은 그 持分은 自由로 處分할 수 없다. 따라서 必要財産으로서 하나의 法人財産에 가깝다. 이 主體는 社團的으로 結合하는 社員의 全體이며 하나의 永續的인 人的 結合體이다.

결국 權利能力 없는 社團은 그 性格이 組合의 定款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內部組織에 관해서는 소위 社會法的 領域이 展開된다.

나) 合手的 組合

Gierke는 로마法的 個人主義를 부수고 個人외에 團體의 獨立의 存在를 確立했다. 그는 組合關係에 대하여도 순전한 債權法上的 組合契約(Vertrag)외에 身分法上的 結合(Vereinigung)에 의한 組合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身分의 結合에 더잡은 組合이 여기의 소위 合手的 組合(Gemeinschaft zur gesamten Hand)이다.⁽⁴³⁾

Gierke는 사람의 結合關係를 團體關係의 그것과 組合關係의 그것으로 大別했다. 이리하여 團體關係의 結合을 法人인 團體와 權利能力 없는 社團으로 구분하고 組合關係의 結合을 合手的 組合과 순전한 債權關係의 組合으로 區分한 것이다. 그는 순전한 債權關係의 組合에는 債權法上的 組織만이 支配하나 身分法上的 基礎에서는 合手的 組合에는 身分法上的 原則과 財産法上的 原則이 共同하여 支配한다고 보았다. 人格法上的 團體와 債權法上的 組合과의 사이에 人格法上的 原則과 債權以上의 原則과의 共同支配域인 合手的 組合이 존재하고

(43) Otto von Gierke, Genossenschaftstheorie, S. 339; Privatrecht, Bd. I, S. 663 이하에서 引급하고 있음.

社會法上的 團體와 個人法上的 組合과의 사이에 社會法の 要素를 含有하는 個人法上的 合手的 組合이 存在한다고 하였다.⁽⁴⁴⁾ 또한 全體와 部分과의 統制關係가 아니라 組合員 相互間의 對立關係이기 때문에 合手的 組合은 個人法の 領域을 넘어질 수는 없다. 이 組合의 最初의 形態는 家族共同體이며 그후 合手的 團體의 形態는 親族法の 領域을 넘어서 未知의 그러나 利害를 같이하는 者 사이에도 가능한 結合契約의 基本的 形態가 되었다. 오늘날 勞使協議會, 協同組合, 勞動組合, 商事組合 등은 이의 한 形態인 것이다. 여기서는 *Mutschierung bricht nicht gesamte Hand* 즉 利用의 分割은 合手制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原則이 支配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이 단순한 債權法上的 結合이 아니라 主體의 身分的 結合에 基礎를 둔다는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그것이 오히려 身分法보다는 財產法上 중요한 結合形態로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合手的 組合은 사람의 意思와 關係없는 原因에 의해서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合手的 組合은 個體로서의 組合員과 團體로서의 組合과의 領域分界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지 않고 한쪽은 團體에 가깝고 한쪽은 債權的 組合에 가깝다. 따라서 이 合手的 組合의 彈性性은 現代私法學上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이상을 要約하면 ① 合手的 組合의 成立은 身分法上的 結合에서 생긴다. ② 合手的 人的 結合은 組合員 相互間에 있어서 孤立된 個人間의 債權的 契約關係와는 다른 性質을 갖는다. 여기서 個人法과 社會法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본다. ③ 合手的 組合의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각자는 結合된 全體로서의 權利를 갖고 義務를 진다. ④ 合手制에 의하여 結合하는 集合體는 全體로서 行動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法人團體가 아닌고로 組合員의 意思는 組合員의 共同의 意思이지 獨立한 團體의 意思는 아니다. ⑤ 同一性을 持續하면서 合手的 組合을 變更시킬 수 있다. ⑥ 合手的 組合은 法規 또는 組合의 規約에 定하고 있는 解散事由에 의해서 解散한다.

3) 非營利社團과 組合에 대한 立法政策

工場새마을運動이 대개 社團과 組合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면 그 立法政策이 問題된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Léon Duguit가 社會連帶思想(Solidarité sociale)에 의거하여 共同體法理論을 展開하고 있거니와⁽⁴⁵⁾ 非營利社團이나 組合에 대한 立法·司法政策은 組合法人論을 取하며 獨逸보다 앞서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工場새마을運動을 전개할 때 取할 國家의 立法政策을 프랑스組合論에 따라 설명코자 한다. 특히 1901년의 프랑스 立法은 制限의으로 非營利社團이나 組合을 取扱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理論과 判例가 發達하여 있다.

가) 非營利社團

(44) 合手(Gesamthand)란 名稱은 身分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主體가 共同하여 그의 權利義務를 實行하고 處分하는 경우에 全員이 손을 잡고 主體의 結合을 明白히 한에서 나온 것이다.

(45)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 V, 1925.

프랑스에 있어서는 非營利社團(associations)은 營利組合과는 달리 항상 非合法的인 것으로取扱되어 왔다. 이것은 過去 封建體制下的 諸團體 특히 同業組合, 宗教的 社團 등의 維持・存續 및 再生 復活을 극도로 경계한 革命當時의 個人主義를 推進하기 위한 1791年 6月 14日의 Le Chapelier法의 영향을 받은 民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結果로서 職業團體의 結成・維持가 排除・否定될 뿐 아니라 一般的으로 非營利目的을 갖는 社團結成의 法的 手段이 抹殺・無視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은 個人主義法原理上으로 보더라도 是認될 수 없는 태도였으나, 團體 특히 中世의 團體 復活에의 극도의 혐오・경계 때문에 國家이외에 이것과 個人의 中間에 營利社團이 외에는 社團의 介在를 否認함으로써 復數人에 의한 共同目的의 追求를 위한 團體結成의 權利는 大幅 制限하여 非營利社團은 그 設立뿐 아니라 運營에 있어서도 큰 곤란을 겪었다. 따라서 職業的 社團 宗教的 友愛團體는 전혀 그 法律的存在가 否定되었다. 다만 相互扶助・文藝・祭祀・慈善에 관한 團體들은 私的 契約으로서의 存續의 餘地가 보였다. 그러나 19世紀의 無許可社團에 대한 억압은 점차 풀려 自由設立主義는 20世紀에 들와 그 實現을 보게 되었다. 即 1901年 7月 1日의 法은 非營利社團 내지 團體結成의 大憲章으로서 나타났다.⁽⁴⁶⁾

非營利社團(associations)은 우리 民法 第32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契約, 知識 또는 그 活動의 共通化, 永續性, 利益分配의 不存在를 基本的 構成要素로 하는 復數人의 團體를 말하며 大別하여 觀念的・理想的 目的의 非營利社團(association à but idéal)과 經濟的・物質的 目的의 非營利社團(association à but économique)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區別은 團體法에 있어서 立法政策上 매우 중요하다. 즉 經濟的 目的의 非營利社團은 經濟의 進展에 따라 각종의 法律의 制定으로 自由로운 法的 地位가 부여 될수도 있었으나 이와 反對로 哲學的 내지 觀念的 目的의 非營利社團은 상당히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 왔다.⁽⁴⁷⁾

① 觀念的 目的의 非營利社團

프랑스의 1901年 7月 1日의 法은 非營利社團을 契約으로 보고 知的 活動共通化의 實現方法으로서의 非營利社團의 設立一般에 대하여 第2條에서 아무 許可 또는 事前届出 없이 自由로 形成할 수 있다는 非營利社團結成自由(la liberté d'association)의 基本的 態度를 取했다. 다만 届出이 없으면 法人格享受의 利益을 갖지 못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無届出非營利社團(association non déclarée)은 不法한 原因 또는 目的에 의해서 設定된 것이 아닌 限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서 法的 存在를 取得한다. 法律上的 能力은 갖지 못하므로 訴訟은 社員全員의 이름으로 해야하고 社團은 固有財産을 갖지 않고 自己의 이름으로 動産・不動産을 有償・無償으로 取得할 수가 없다. 따라서 當初에는 이런 社團은 社員의 分擔金까지도 受領할 수

(46) Duguit, Droit constitutionnel, 1925, t. V, p. 615. 이 헌법교과서의 맨 뒤에서는 團體法的의 總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47) 우리나라 民法第32條가 觀念的 目的의 非營利社團의 設立를 認定하고 있으나 하는 것은 一律의 論하기는 어렵다.

없다고 주장되었으나 그후에는 無届出社團을 認定하는 이상, 이들에게 存立의 物質的 手段을 拒否함은 있을 수 없다는 見解가 有力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現在 프랑스에서는 分擔金의 徵收의에 定款違反의 경우의 社員의 違約金의 支拂請求, 나아가 出資의 受領도 適法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⁴⁸⁾ 또 많은 學者들은 無届出非營利社團은 共同財産을 形成하고 利益을 取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不動產取得도 포함되며 이것은 合有(en main commune) 또는 特別公有라고도 주장한다. 이와같이 하여 오늘날은 届出없는 社團도 그의 能力의 面에 있어서는 届出社團의 法人格의 效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⁴⁹⁾ 다만 1901年 7月 1日의 法上法人과 같이 取扱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② 經濟的 目的의 非營利社團

經濟的 非營利社團은 營利事業이외의 經濟的 活動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社團이며 具體的으로 말하면 協同組合(coopératives), 相互扶助組合(sociétés de secours mutuels), 職業組合(syndicats professionnels), 相互保險(assurances mutuelles)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는 營利社團과 類似 내지 同質의이나 構成員의 共同的 幸福 또는 生活安定을 직접의 目的으로 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社團은 우여곡절을 겪고 1901年 7月 1日의 法에 의하여 自由設立主義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첫째, 協同組合은 보통 協同組合(sociétés coopératives)이라고 불리우나 實質은 非營利社團에 屬하며 費用의 節減·縮少, 利益의 增殖 등 中間者의 介入을 排除하려는 것으로서 그 目的의 다름에 따라 消費協同組合, 生産協同組合, 信用協同組合으로 나눌 수 있다.⁽⁵⁰⁾

協同組合의 法的 性質은 그것이 友愛組合, 連帶主義의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特別非營利社團으로서 營利組合制度를 適用하고자 하는 法的 技術이 發展되고 있다. 특히 Duguit의 憲法論은 이를 中心으로 저술되고 있다.

이 가운데 消費組合이 組合員에게만 商品을 分配하는 경우 프랑스의 判例는 이를 商事의 營利組合(會社)이 아니라 民事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最近 프랑스에서는 協同組合法이 發展하여 一般法的 規律과 特別法的 規律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915年 12月 18日의 「生産 및 信用의 勞動協同組合」(société coopérative de production et de crédit), 1917年 3月 13日의 相互保證組合(société de caution mutuelle), 1923年의 技能者協同組合 등 많은 組合이 이에 屬한다. 특히 1917年 5月 7日의 消費協同組合(sociétés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에 관한 法은 그 目的을 ① 組合自身 또는 그의 相互間의 結合에 의한 物品買入, ② 製造된 消費物件의 加入者에의 佯가매각, ③ 社員間 生産利益의 分配, ④ 利益一部의 社會連帶事業에의 提供에 두고 있다. 또 生産 및 信用의 勞動協同組合(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48) Beudant, Lerebour-Pigeonnière et Lagarde, Cours de droit civil francais, t. XII bis n°524.

(49) Philippeville 裁判所 1935年 1月 3日 S. 1936.2.40.

(50) Lyon-Caen, Renault et Amiaud, Traité de droit commercial, n°1033.

production au de crédit)에 관한 1927年 2月 25日의 法 등은 현재까지 계속 補完되고 있다.

둘째, 職業組合(syndicats professionnels)은 勞動者와 使用者의 그것이 있고 存在樣式과 活動內容에 따라 매우 多樣하나 民法上 非營利社團임에는 같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Le Chapelier 法은 職業團體를 組織하려는 者에 대하여는 刑事的 制裁를 加했으나 1901年 7月 1日法 이후에도 Trust나 Cartel에 대해서까지도 制限적이고 1920年 3月 12日法에 의하면 職業組合은 一般非營利社團보다도 광범한 權利가 주어졌다. 그러나 勤勞者의 職業組合에 있어서는 역시 이러한 法들이 排除되어 왔다.

셋째, 相互扶助組合은 非營利社團임에는 틀림없으나 계속적인 制裁를 받아오다가 1901年 7月 1日의 法에 의하여 그 設立에 있어서는 選擇의 適用을 받게 되었다. 어쨌든 非營利社團으로서의 相互組織은 옛부터 하나의 同僚團體(compagnonnage)와 連繫되어 發展하였으되 出資에 의한 有價物을 갖으며 그것을 共同財產으로 하나 利益의 分配가 없다는 점에서 營利組合과는 다르다.

넷째, 相互保險도 復數人에 의한 社團으로서 그 構成員은 共同危險下에 集合하고 災害가 發生했을 때 서로 損害를 填補할 것을 約束하는 것이므로 外觀上은 營利團體처럼 보이나 단순한 非營利社團에 불과하다.

나) 組 合

組合에는 私法上의 組合, 團體로서의 組合을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團體로서의 組合에 局限한다.

組合이 契約에 의하여 成立되는 것은 의심없으나 이때 私法上 個個人이 統一의인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集合하는 경우 個人의 意思나 立場을 떠나서 組織이 있게 되고 團體 그 自體로서의 生命과 機能을 갖게 되는 바 이것은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個人을 超越한 活動單位로 되어서 나타나고 組合도 私法上의 團體로서 그 例外가 아니다. 여기에 組合을 構成하는 소위 組合員으로부터 獨立한 組合이 登場하게 된다.

이러한 契約에 의한 組合員間的 團體創設過程의 파악은 法律보다는 社會學的 考察에 의해서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活動으로 볼때에는 組合財產이 存在하고 그 活動의 人的組織으로서 組合의 業務執行者가 있다. 組合活動 및 業務執行의 活動은 觀念的으로 組合員個人의 財產 및 活動과의 混在가 있을 수 없고 相互分立·獨立하여 있어야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⁵¹⁾ 원래 第2次的·內部的으로는 利益分配에 관한 組合員間的 利害의 對立이 存在할 수 있으나 第1次的 組合의 取得活動 自體는 本質的으로 組合員 各者에 一律·平等的이고 또 共同的이다.⁽⁵²⁾ Thatter는 組合에 있어서는 「全員은 1人을 위하여, 1人은 全員을

(51) 末弘嚴太郎博士는 組合은 獨立財產主體로 되며 經濟活動의 單位로서 社會關係를 構成하나, 獨立的인 經濟主體로서 存在하는 限 組合員 個人과 떨어진 獨立財產을 갖는다고 한다.

(52) Copper Royer, Traité des sociétés, t. I, p. 290.

위하여 (Tous pour un, un pour tous)란 語句가 그대로 妥當하며, 組合員은 合致된 意思에 따라 事業을 遂行하는 것으로서 그 事業의 成功은 組合員의 協助에 의존하고 각 組合員의 利益은 全員의 그것과 從屬的·連帶的 關係에 있으며 이것이 組合契約으로 하여금 다른 기타의 契約으로 부터 別個獨立의 對立的 關係에 놓이게 한다.

組合은 共同事業을 營爲하기 위한 統一의 活動을 行하는 團體를 形成하여 그 自體 社會的 活動을 하는 單位를 이루고 있는고로 活動으로 얻은 財産을 組合員 各자의 財産과는 別個의 것이며 組合員自身의 財産 즉 組合財産이다. 이것은 一種의 團體財産으로서의 特別財産 또는 目的財産으로서 個人財産과는 獨立하여 存在한다. 또한 組合員의 組合活動은 個人活動과는 觀念上 對立的이며 여기에 組合의 獨立性이 存在한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로마法上의 組合과는 달리 組合의 法律的 獨立性을 완전히 承認하고 있는 것이 이에서 나타난다. 소위 組合法人主義가 이것이다. 또한 이 점에서 中世 檢單法上의 組合團體主義의 한 態樣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法人主義 즉 團體的 法人性承認傾向과 비슷하다. 다만 組合이 法人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組合財産은 總組合員의 共有(mettre en commune)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組合을 法人으로 認定하지 않는 경우에는 組合債權者의 優先權을 肯定하기 어려우나 組合債權者는 항상 그들과 組合代表者間의 去來上 財産差押·賣却할 수 있음에 反하여 個人債權者는 組合이 存續하는 限, 組合員의 組合財産을 차압할 수 없다 고하며, 그 根據로서 共有財産, 相續財産에 관한 民法의 諸規定 및 특히 組合에 관한 民法이 적용된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組合法人格을 承認하고 있는 바, 判例上으로는 대개 民法上의 條項을 形式的으로 引用함에 그치기 때문에, 法人은 一般的으로 그 存在를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第三者에게 知悉시킬 것이 要求되는데도 불구하고 匿名組合은 그 存在를 相對方에 알리지 않는 것을 그 本質로 하는만큼, 이러한 종류의 存在에 法人格을 인정하는 것은 큰 矛盾이며 따라서 判例는 대개 法人格의 問題를 從來에 比하여 한층 더 實證的으로 法條에 따라서 考察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소 哲學的考察이 아쉽다.

다음 學說上으로는 특히 Troplong 및 Duvergier가 有名하다. 이들은 組合法人說을 沿革的 論據와 實定法的·解釋論의 根據의 두가지 面에서 수립하고 있다.⁽⁵³⁾ 특히 後者は 現 프랑스民法典에 있어서 組合規定 중에서 그들의 主張을 確認하고 있는 바, 그 引用條項은 무척 많고 그 範圍가 論者에 따라서 一定치 않기는하나, 특히 代表的으로 Duration은 組合은 組合員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도 第三者의 關係에 있어서도 第三者의 人格者로 보며 組合員과는 別個로 權利·義務를 진다고 한다. 이러한 法人性은 民法規定에서 나오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規定에 어떠한 理由에서 法人格承認의 基礎가 되는 가에 대한 明確한 說明이 없다는

(53) Thaller, Traité général théorique et pratique de droit commercial, De sociétés commerciales p. 221.

것 흠이다.

한편 프랑스에 있어서 組合非法人說의 展開도 또한 매우 活潑하다.

Frémery는 會社는 하나의 團體的 存在임과 동시에 理性的 存在(être de raison) 즉 人間이라고 본다. 이 人格者는 住所를 갖고 財産을 가지며 債權·債務를 約定하는 바, 이런 類似制度는 民法에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는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을 認定하지 않는 結論으로서 甲·乙 兩者의 組合에 있어서 組合과 契約을 체결한 債權者는 이들 두 이름만을 債權者로 할 수 있을 뿐으로 만일 그들이 支拂能力을 잃은 경우에는 各者의 財産위에 個人債權者가 競合하게 된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⁵⁴⁾

Alauzet는 주로 組合訴訟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組合事業에 관한 一切의 訴訟은 組合員이 全員 자기의 이름으로 行해야 한다고 한다. 즉 訴訟에의 出頭도 個人的으로 行하며 團體的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法人으로서 出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組合員 한사람만이 訴訟에 出頭한 경우 組合契約 自體 또는 기타 行爲로서 授權이 없는 限 組合은 適法하게 代表되지 않는다고 한다.⁽⁵⁵⁾ 다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극소수에 그침을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특히 Pothier는 非法人說의 根據로서 組合과 共有의 差異를 들고 있는 바, 그는 만일 組合에 法人格을 認定한다고 한다면 共有와의 相異點을 첫째로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생각컨대 公有에 法人格이 擴大하지 않는 것은 萬人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組合은 契約에, 共有는 準契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組合도 共有와 마찬가지로 法人格을 構成하지 않는다는 것이 明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 團體의 公示와 그의 欠缺

契約과 團體 내지 法人格과의 關聯은 매우 어려운 問題인 바 여기서는 合名會社에 局限하여 論한다. 이 경우 合意 즉 設立行爲에 의하여 團體가 成立하고 이것을 기초로 法人格이 부여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말하자면 構成員總體가 그의 物的 要素인 소위 目的財産에 대한 支配權을 取得하고 그다음 支配權行使方法이 具體적으로 約定 혹은 法定되어 活動의 基礎가 생긴다.

合名會社의 成立에는 會社의 契約的·實質的 側面과 그 法人格의 形式的·節次的 側面으로 나누는 경우 가령 後者 즉 形式的·節次的 過程에 違法이 있어 法이 그 人格을 賦與할 것을 拒否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實體까지 無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런 경우 會社의 實體는 當事者의 合意 기타 소위 設立行爲에 의하여 성립하고 극히 形式的인고로 그 方式違背는 그 會社에 대한 法人格否認의 結果를 가질 뿐 會社의 實態는 의연히 存在한다고 볼餘地가 남는다.

프랑스 合名會社는 民法의 組合 즉 營利組合의 一種으로서 當然契約이다. 다만 그것은 商

(54) Frémery, Étude de droit commercial, p. 31.

法典이 要求하고 있는 節次에 따를 것을 要한다. 節次는 契約을 書面으로 作成할 것 및 法定公示에 따라야 하는 바, 傳統的으로 이 節次를 踏지 않을 때에는 會社는 無效라는 法的 構成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그 無效는 復雜한 問題를 낳는다. 合名會社와 民法의 組合 및 人的 會社와의 差異도 결국은 公示의 有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法人格도 이 理論에 따라 說明된다 하겠다. 즉 營利團體를 나누어 對外的 存在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할 때 前者는 匿名組合 내지 보통의 組合, 後者는 會社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對外的 表現은 社員間의 內部契約 이 第3者를 拘束하는 것을 意味하는 바, 例를 들면 共同財産을 定할 때에는 第3者는 이것을 尊重할 것을 要한다. 이에 反하여 外部的 存在를 갖지 않는 團體에 있어서는 共同財産은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第3者는 이것을 尊重할 것을 要하지 않는다. 즉 公示가 없으면 對外的 效力이 없다.

프랑스의 合名社會는 民法의 組合과 同一한 實質을 내포하면서 商行爲를 目的으로 하고 法的 公示를 하면 合名會社가 되는데 1966年 7月 24日의 法은 會社設立公示節次는 命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登記日로부터 法人格을 取得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公示의 省略이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取扱하느냐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 原則적으로 無效이다. 이것이 公示없는 경우의 制裁이다. 또한 極斷論은 公示가 없으면 實體가 어떠한 會社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取한다. 이에 대하여 Radbruch같은 法哲學者는 이와 反對로 法은 여러가지의 目的을 追求하는 것으로서 가끔 價値의 모순(Antinomien der Rechtsidee)을 가져오나, 一定한 利益을 넘어서 어떤 者에게만 特別한 保護를 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⁵⁶⁾ 이런 취지에서 公示欠缺의 主張을 어떤 者에게는 허용하고 또 어떤 者에게는 許容하지 않는 것은 法的 安定을 해치는만큼 一律적으로 取扱해야 할 것이나 法的 安定의 過度한 強調에 의하여 具體의 妥當性을 해쳐서도 안된다.⁽⁵⁷⁾ 또한 無效主張의 利益은 金錢的인 경우에 限해야 되며,⁽⁵⁸⁾ 判例도 그와같다. 또한 會社活動開始후 無效가 主張된 경우에도 그 無效는 遡及하지 않는다고 한다.⁽⁵⁹⁾

이와같이 프랑스 法은 公示 없으면 會社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立場이나, 反面 判例는 社員相互間「事實上的 會社에 대하여 會社의 成立을 認定하려고 한다」. 이것은 公示가 없어도 合意는 이미 拘束力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과 같은 立場으로 歸着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에는 會社는 合意만으로 成立하며 단순히 이것으로써 第3者에 對抗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 舊法과 같은 立場이 된다. 이것은 登記이전의 生成過程에 있는 法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1966年의 新會社法은 合名會社가 公示節次를 踏지 않으면 法人格을 取得할 수 없다고

(55) Alauzet, Commentaire de code de commerce et de la législation commerciale, p. 31.

(56) Radbruch, Rechtsphilosophie, 1954, S. 70 ff.

(57) 田中耕太郎, 法の 妥協의 性格, 法律哲學論集, p. 78이하

(58) Lyon-Caen et Renault, 前掲書, t. II, p. 206.

(59) Thaller et Percerou,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commercial, p. 260.

하였다(第5條). 따라서 合名會社도 解釋上 마찬가지로 재겨야 한다고 한다(第361條).

이것은 프랑스 會社法政策의 傳統을 말하기도 하나 最近에는 諸外國制度 특히 獨逸과 一致한 歐州共同體와의 便宜를 생각하여 될수 있는대로 會社無效를 制限하려고 하는 法의 意圖로 보아 公示欠缺은 會社의 法人格을 否定하는 效果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⁶⁰⁾

라) 組合에 대한 새로운 地位의 提示

프랑스에 있어서 職工協同組合의 傳統은 순수한 資本主義哲學에 問題點을 提起하는 思想家와 同僚團體(compagnonnage)에 의하여 이어져 왔다.

이러한 協同組合은 대개 資本과 勞動의 出資者로서의 二重的 資格을 겸한 組合員(des associés qui combinent la double qualité d'apporteurs de capital et de travailleurs)으로 構成되는 바, 이 協同組合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는 資本에 대한 勞動의 優位가 認定되어 理事會議席의 最少限 3분의 2 이상을 勤勞者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協同組合의 利益의 分配原則은 가령 組合員資格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最少限 實收超過額의 4분의 3을 勤勞者全體에 保障하고 있다. 組合員사이에는 投入資本의 額數에 관계없이 總會에 있어서는 平等하게 一票를 行使한다. 組合財産은 資本株式化할 수도 없거니와 分配될 수도 없다. 현재 프랑스에는 約 640個 이상의 勤勞者協同組合(coopératives ouvrières)이 있고 組合員數는 34,000이 農業分野, 分配·信用分野는 훨씬 광범하게 퍼져 있다. 특히 最近의 傾向은 이러한 組合을 위시한 科學的 내지 技術이 進歩인바, 이 경우 協同組合은 資本보다는 하나의 能力競爭이 中心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協同組合이 高次元의 專門의 知識提供이란 서비스的 活動이 主가 된다.⁽⁶¹⁾ 이하 重要한 勤勞者組合의 類型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傳統的 組合員組合——傳統的인 資本會社와 對峙되며 이 組合은 勞動의 能力和 權能을 共同으로 投資하여 成立되어 왔다. 물론 財政手段은 契約方式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組合員은 事業企劃을 위하여 會合하며 그들의 勞動을 投資하고 組合을 管理하며 果實을 取得한다. 組合의 모든 權力은 組合加入勤勞者들로부터 나온다. 匿名組合員(les bailleurs de fonds)은 經營監督權이 없고 社員總會는 社員全員으로 構成되고 理事와 監事를 뽑는다. 이때 體制는 資本會社의 그것과 비슷하다. 오히려 商事會社의 共有權(droit commun)에 가깝다고 한다. 비록 加入勤勞者만 參加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組合은 각종 社會立法과 勞動組合法이 完全히 適用되어야 한다고 한다.⁽⁶²⁾ 強制寄賦金方式에 의한 社會基金(le fonds social)은 讓渡不可能하며 加入者(associés)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많은 勤勞者들이 이러

(60) 이 傾向은 최근 1951年 2月 13日 Lyon 法院의 判決 D. 1951. 502 不完全한 書面으로 會社를 만들었을 때 會社契約(promesse de société)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도 인정하기 어려우면 사실상의 組合(Société de fait)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1) 韓正鉉, 프랑스의 企業改革에 관한 一提案, 서울大「法學」20卷 1號 p. 25이하.

(62) Pierre Sudreau, La réforme de l'entreprise, 1975, Documentation française. 韓正鉉, 前揭論文, p. 255. 이하

한 協同組合을 통하여 保險組織이나 相互保險(caution mutuelle)에 加入하기를 願하고 있다. 이러한 人的 組合은 특히 資本部門보다 서비스部門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며, 自治團位로 이룩한 下請企業에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組合經營이 난관에 부딪치면 企業의 生存을 위하여 休養施設로 轉換하기도 한다. 이러한 組合에는 生産勤勞者協同組合(les sociétés coope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도 큰 몫을 차지한다.

② 參加的 株式會社——1917年 4月 26日의 法에 따른 이 株式會社는 勤勞者參加를 契機로 한 勞動株를 中心으로 하고 있다. 讓渡할 수 없고 押留할 수 없는 이 株式는 勤勞者의 集團의 所有(Propriété collective)이다. 이것은 勤勞者協同組合이란 仲介體를 통하여 管理되며 勤勞者配當權이 주어지고 있다. 株主總會는 勤勞者代表가 들어가고 理事會에도 勤勞者代表가 있다. 이 會社는 그동안 不振했으나 1972年 會社部長官이 그 概念에 대한 研究를 착수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分配利益의 配當金 및 第3者와의 關係에 있어서 相互平等한 勤勞者代表에 관한 權利가 주어지도록 한다. 勤勞者에게로 돌아올 非分配利益은 會社積立金(réserve)에 든 特別計算으로 個別化하여 從業員代表들이 管理한다는 것이다. 이 會社를 잘 運營하면 勤勞關係에 발생이 많은 家族會社의 轉換을 가져오며 會社의 支配權을 經營參加의 形態下에 모든 責任과 危險에 대한 從業員의 參與로 점진적으로 實現할 수 있다고 한다.

③ 非營利企業——이것은 營利目的보다는 知的(哲學的), 道德的, 社會的, 文化的 그리고 教育的 事業의 實現을 위하여 많이 利用되는 제도이다(entreprise sans but lucratif). 이것은 一定한 勤勞者들이 아무 營利的 目的을 내세움 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精神에 따라 諸活動을 共同으로 遂行할 때에 있게 되는데 가장 큰 短點은 親和力을 어떻게 維持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들이 내세운 精神에서 이탈함이 없이 하나의 一般利益(un intérêt général)에 相應한 一定한 創意力을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觀念的(理念的) 組合에는 營利組合과 非營利組合의 中間形態로서 民法의 規定이 大幅 制限되고 勞動組合法, 經營參加法 및 기타 社會法이 대치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資本參加下에 制限된 利益밖에 누리지 못하고 一定比率의 利益은 一般利益을 위한 事業에 出資하는 方式으로 營利的 目的없는 다른 機關에 기부할 수 있을 뿐이다. 清算殘餘金은 類似한 目的의 道德的 人格에 현금되어야 한다. 營利會社와의 合併도 禁止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要約하면 ① 社會資本없이 構成되는 人的 會社의 새로운 形態의 實驗의 許容, ② 一部資本의 集團的 所有를 허용하는 株主와 勤勞者代表 즉 經營參加와 맞먹는 非營利組合의 새로운 法을 定할 것, ③ 組合과 非營利社團사이의 中間企業은 즉 營利的 目的 없는 企業의 法律을 提案할 것 등이다.⁽⁶³⁾

(63) 韓正鉉, 前揭論文, p. 256이하 참조.

V. 法 制 化

우리는 위에서 새마을運動 자체가 地域社會開發運動으로서 그趣旨가 훌륭하며 그傳統性과 合法性을 우리의 歷史 속에서 찾아보았다. 歷史적으로 이러한 民間主導型地域開發의 着手가 수없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執行者나 官吏들의 독주 내지 干涉으로 自主性을 못 찾코 좌절되었음을 볼 수 있고, 오늘날의 工場새마을運動도 그趣旨자체는 좋았으나 처음부터 官의 지나친 介入으로 工場에 있어서 眞正한 勞使協助를 期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筆者는 工場새마을運動은 原則적으로 勞使自治에 의하여 推進하되 政府는 다만 勞使協議會代表(中央勞使協議會)를 通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 指導를 內容으로 하는 法律을 제정해야 한다는 前提下에 이하에서 工場새마을運動의 法制化를 論求하고자 한다. 勞使自治라고 하면 위에서 이미 團體法研究에서 언급한대로 勞動組合 이외에 勞使協議會 및 기타 勤勞者의 相互信用 協同組合등의 諸活動을 가리키는 말할 나위가 없다.

本稿에서는 勞動組合은 勤勞者의 經濟的地位向上을 위한 職業團體(투쟁단체)로 보고 工場새마을運動은 勞使協助(勞組法 第6條)를 中心으로 하는 만큼 勞使協議會가 그 中心이 되고 이를 中心으로 또 여러가지 勞使協同體의 展開를 想定한다. 따라서 우선 勞使協議會法과 協同組合 立法을 推進하되 그것을 우리의 實情에 알맞도록 法制化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勞使協議會부터 본다.

1. 勞使協議會法

勞使協議會는 20世紀의 參加思想의 한 表現이요 工場에 있어서 勞使協助와 勤勞者의 人間問題解決을 위하여 要求되는 것이다. 따라서 80年代의 工場새마을運動도 그 성공은 이 勞使協議會의 運營如何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 現代工場勞動生活과 勞使協議會

産業革命에 있어서 두가지의 原動力으로는 投資와 勞動의 分業이다. 投資決定은 原價(les prix de revient)를 낮추고 生産性を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勞動組織을 強化하여 나간다. Henry For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完全한 經濟發展은 높은 賃金水準을 可能케 하며 이로써 需要의 增大效果를 갖는다. 이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또 새로운 投資를 必要로 한다. 이러한 매카니즘에 따라 生産과 消費는 上昇한다. 生産性의 上昇은 賃金上昇, 利益增大, 그리고 施設費用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대우가 생산성을 제고시킨다고 한다.

이외에 이 매카니즘을 可能한 限 效果의으로 活用하기 위하여는 勞動이 또한 科學의으로 組織될 것이 必要하다. 테일러主義(Taylorism)에 따르면 勞動의 速度를 올리려면 勞動은 單純化되고 反覆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投資와 함께 勞動의 科學的 組織(l'organisation scientifique du travail)은 成長을 持續하여 나간다고 한다.⁽⁶⁴⁾

(64) Pierre Sudreau, La réforme de l'entreprise, documentation Française, 1975. 10. 18, pp. 45-46. 이에 대하여는 韓正鉉, 前揭論文도 同旨.

이러한 Taylorism은 工業初期에는 不可避했을지도 모르며 또 그 결과로 消費의 基本的 要求를 充足시키고 勞動時間이 短縮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品質改善과 商品廣告로 말미암아 勤勞者들은 勤勞條件의 體系的 改善에 앞서 生活水準의 向上에 압도되어 왔다.

첫째, 오늘날 勞動의 토막내기(Le travail en miettes)란 表現은 極도로 細分化된 勞動의 日常業務를 特徵짓게 되고, 그위에 勞動은 可能的 限 單純化되고 反覆的이며 그 行爲에 수반되어야 할 創意性이 完全히 排除되어버린 職務의 機械的인 遂行속에서 人間人格의 展開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勞動의 組織은 엄격한 特殊化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低賃勞動이 普遍的이거나 다른 한편 長期就學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젊은 人口層들에 있어서 지루하고 싫증나는 勞動에 대한 不滿이 發生하는 것은 不可避한 現狀이다. 많은 教育을 받은 者는 자기의 教育水準과 擘막한 拘束生活에서 오는 不滿도 다찬가지의 現狀이다.

둘째, 作業環境이 많이 改善되었으나 一般的으로 오늘날 工業勞動은 역시 소음, 열, 반복적 作業速度 등으로 拘束的인 勞動生活을 가져온다. 이러한 工場內에 있어서의 現狀과 工場 밖의 一見 화려한 生活의 대조에서 勤勞者들의 잠재적 不滿이 쌓이게 된다. 作業은 24時間 계속적인 경우(용광로등)가 많아 기계적인 勞動配置(3交代制)으로 勤勞者間에 連帶的인 義務가 생겨 勞動生活의 拘束은 물론 家庭生活의 리듬이 維持되지 못하여 文化生活에 있어서 不滿이 쌓인다.

셋째, 連鎖勞動의 速度와 要求는 勤勞者의 對人的 交流를 감소시키며 人格展開에 必要한 對話의 機會를 制限한다. 우선 組織的 集團勞動에 있어서 規律의 要求는 強壓的인 集團勞動에 있어서 規律의 要求는 強壓的인 職級權力行使를 不可避하게 만들고 따라서 單純하고도 直接的인 對人關係의 습성에 배어 있는 靑少年 勤勞者들은 嚴格한 命令의 權威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또한 世代間的 心的 狀態의 괴리는 또한 現場의 職工長과 젊은 勤勞者 사이에 明白히 나타난다. 勞動의 科學的 組織은 緊張을 助長시킨다. 즉 組織이 嚴格하게 運行될 때 勤勞者는 機械가 아닌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點은 勞動의 效率的인 利用보다도 勞動을 組織하기 위하여 使用된 方法에 대한 異議에 바탕을 둔 拒否反應이 일어나게 된다.

넷째, 巨大한 生産單位의 集中現狀으로 말미암아 人的 再編成이 현저하게 되고 通常的인 作業組織이외에 作業方法의 合理化이든, 作業活動이든간에 命令系統이 다른, 많은 部署職務가 수 없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生産의 各基本單位는 서로 경합하며 잘못 받아들여져 相異한 命令이 내려진다. 이것은 作業現場뿐만 아니라 多樣한 部署命令體系에 있어서도 權威의 소의적 現象을 나타낸다. 그가 勤勞者이든 事務員이든 아니면 幹部이든간에 各者에 있어서 企業은 하나의 匿名的이고 復雜한 強制網狀組織(un réseau de contraintes anonymes et complexes)으로 되어간다. 現存經營陣의 決定은 個性을 잃어 非人格化되고 呼訴에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 從業員의 直接上司도 똑같이 1個組織의 部分이지 그와 對話가 가능한 自然人으로서의 長은 아니다. 큰 方針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있는 使用者로부터 決

定된다. 즉 그에게는 接近이 不可能하며 그러면서도 그의 決定은 자기의 生活을 拘束하고 있다. 人間疎外가 여기서 생겨난다.

다섯째, 巨大한 生産單位形態에서 工業을 發展시켜온 經過로써 都市集中이 생겨났다. 이런 경우 集團的 居住條件은 個別的 住居地域만큼 順調롭지 못하게 되고 이리하여 다른 居住地域과의 比較는 大量通信·廣告手段의 發達로 그들의 勞動生活을 더욱 意識시키고 새로운 挫折感을 불러 일으킨다. 이리하여 勞動條件의 根本的 改革에 대한 熱望에서 비롯되는 社會의 一般的인 改革運動(de la société)이 全體的 背景을 이루게 된다(C'est de l'ensemble de ce contexte, imposé par le mouvement général de la société, que procède l'aspiration à un changement profond des conditions de travail).⁽⁶⁵⁾ 오늘날 勞動問題 내지 勞使協議의 推進을 先後進國家를 막론하고 重要視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世界各國의 勞使協議制度

오늘날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1970年初 이래, 勞使關係立法을 활발히 改善하여 왔다. 그 傾向은 資本主義社會의 낡은 法律들을 企業의 中心部에 있어서 勞動者들의 集團의 地位를 認定하는 새로운 法領域으로 代替하고 있다. 企業에 있어서 여러가지 相異한 參加形態가 생겨나고 또 補強되고 있다. 특히 重要的 것은 이러한 勞動者의 勞使協議 내지는 參加制度가 모든 企業레벨에서 同時에 定着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作業現場의 勤勞者代表, 職員代表, 年少者代表들이 經營에 골고루 參與하도록 制度化되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半島는 1965年이래 業務의 配置·編成 및 職級調整에 이르기까지 勤勞者를 參與시키는 制度를 마련하고 시험을 거듭하고 있다. 情報과 給與에 대한 새로운 權利가 重要視된다고 한다. 모든 企業의 中心部에 企業委員會(le comité d'entreprise)나 企業協議會가 자리하며 勞使自治의 立法機構를 둔다. 이 立法機構들은 原則적으로 生産單位에 따라 設置되나 立法參與는 企業範圍를 훨씬 벗어난다.⁽⁶⁶⁾

勞使協議會는 대개 特定事項 즉 衛生, 安全, 勤勞條件 및 企業內部規律에 있어서 共同決定을 指向하고 있는데 특히 西獨은 從業員의 採用, 解雇 및 配置轉換의 決定에 있어서 共同決定權을 行使하도록 되어 있다 1951年의 共同決定法은 鐵鋼產業에 있어서 共同管理(une co-gestion paritaire)가 行하여지게 하고, 1952年의 經營組織法은 3名이상의 企業體에 勞使協議會를 設置하며, 500名이상의 경우 3분의 1 비율의 共同決定을 하도록 되어 있고, 1976年의 勤勞者共同決定法은 2,000名이상의 企業體에 勞使共同決定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勤勞者共同決定法이 西獨基本法上 違憲이 아닌가하는 論議가 일고 있으나⁽⁶⁷⁾ 法은 여전히 施行되고 있다. 이외에 스칸디나비아半島,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5) Pierre Sudreau, 前掲書, p. 51. 韓正鉉, 前掲論文 p. 227 이하.

(66) Pierre Sudreau, 前掲書 p. 45이하, 韓正鉉, 前掲論文 p. 230이하

(67) Badura/Rittner/Rüthers: Mitbestimmungsgesetz 1976 und Grundgesetz Gemeinschaftsgutachten. München: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9, S. 298이하

等에 있어서는 勤勞者參加制度로서 소위 小數者(年少者)管理參加制가 1973年에서 1976年까지 4個年의 試驗期間을 거쳐 導入되었다. 이러한 勞使共同決定의 立法추세는 앞으로 유럽 全域에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⁶⁸⁾

이들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人間의 知的 水準이 점차 높아지고 産業構造가 점차 복잡하여져 가기 때문에 勞使間의 共同參與를 承認하지 않으면 生産活動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企業內의 모든 構成員의 코센서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3) 勞使協議會法의 法的 性格

勞使協議會가 勞使協議會法에 의하여 活動할 때 그 職務의 法的 性格이 問題된다. 勞使協議會가 私法的 職務를 遂行하느냐 아니면 公法的 職務를 遂行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理論이 Weimar 時代부터 展開되어 온 西獨에서는 이를 私法的 活動이라고 보는 것이 支配的이다.⁽⁶⁹⁾

Weimar 時代에는 經營協議會(勞使協議會)가 하나의 公的 職務 내지는 公法上的 社團(eine öffentliche Körperschaft)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원래 經營協議會는 構成員의 意思나 協力 없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하나의 公法的 基準으로 간주된 데 그 根據를 두었다.⁽⁷⁰⁾ 특히 公法學者들은 勞使協議會에 위임된 規制課業은 주로 使用者의 公法的 혹은 強制的인 私法的 義務의 履行을 나타내는 바, 이때문에 論者들은 原則적으로 國家에 대하여 지고 있는 義務的·公法的 課業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勞使協議會가 自治를 通하여 達成한다는 것이다.⁽⁷¹⁾

이에 대하여 Weimar 時代 이래의 公法的 主張을 뒤엎고 오늘날 支配的인 地位에 있는 私法的 見解는 다음과 같다.

첫째, 勤勞者가 法에 의하여 그들의 意思와 關係없이 하나의 團體로 團合되었다는 公法的 主張을 찬성할 수 없는 바, 그 理由는 그들이 아무 團體의 組織體를 갖지 않고 단지 그들의 利益을 代表하기 위하여 하나의 代表를 選出할 可能性을 갖고 있는 데 不過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企業內에 있어서 勤勞者가 그들의 意思와 關係없이 하나의 團體에 團合되어져야 한다는 主張은 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勞使協議會에 있어서 企業의 勤勞者는 아무 團體를 設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自然的, 그리고 同一한 企業에의 所屬을 通하여 成立한 그리고 法律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그 속에서 個別勤勞者가 그의 同意에 의한 企業에의 編入을 通하여 스스로 組織되는 共同體(eine natürliche, durch die Zugehörigkeit zu demselben Betrieb entstehende Gemeinschaft, die vom Gesetz nicht geschaffen, sondern vorgefunden wurde und in die der einzelne Arbeitnehmer durch den nie

(68) 韓正鉉, 勞使協議會의 本質, 朴德培교수 叢書, (1979).

(69) 例를 들면 Nipperdey, Arbeitsrecht II, 7. Aufl. (1970) S. 1082. Neumann-Duesberg, Betriebsverfassungsrecht, 1960, S. 81. Hu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2. Aufl. Bd. II, S. 488. Schnorr von Carosfeld, S. 410 등 다수의 견

(70) Diez, Die Betriebsverfassung in der Sozialordnung, Anm. 3 zu §1 Betr. VG.

(71) Diez, 前掲書, 同페이지

ohne sein Zutun erfolgenden Eintritt in den Betrieb von selbst eingeordnet wird)이다. (72)

둘째, 公法學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勞使協議會가 하나의 公法的 職務를 갖는다면, 그의 活動도 또한 하나의 公法上的 行政監督에 服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실은 勞使協議會는 當局에 의하여 任命되는 것이 아니라 勤勞者들에 의하여 選出되기 때문에 그것은 私法的이라는 것이다. 勞使協議會法上 任務違反은 裁判의 對象이지 公法的 監督의 對象은 아니라는 것이다. (73) 勞使協議會의 職務를 이유로 어떠한 公法的機關도 이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勞使協議會의 設置가 社會國家의 要請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만큼 公法的 性格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公法學者들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企業運營에 대한 勞使協議會의 參與는 그것이 部分的으로 社會國家의 原理(Grundsatz des Sozialstaates)를 實現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私法系統에 屬하는 法制度——예를 들면 休暇法制, 解產豫告制, 經營協定 등——를 通하여 이끌어진다라는 것이다. (74)

넷째, 勞使協議會의 職務는 公法的 法規定(öffentlichrechtliches Gesetz)에 의하여 創設되었다는 公法學者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 바, 그 이유는 國家作用에 의한 모든 法律은 議會에 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 있는 諸規定이 私法的인 것이냐 公法的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內容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勞使協議會는 選出에 의하여 構成되고 經營協定도 嚴연한 하나의 法에 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強行法規가 모두 公法的이라는 주장은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75)

4) 勞使協議會와 勞動組合

同一한 企業에서 일하고 있는 勤勞者代表로서 勞使協議會이외에 그와 나란히 一個產業別 혹은 同一職種 혹은 同一企業內에 勤勞者들의 自主的인 統合體로서의 勞動組合이 있는 바, 이 兩者사이의 立法規律에 있어서는 매우 復雜한 問題가 提起된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역시 Weimar時代부터 論難되어온 獨逸理論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76) 勞使協議會와 勞動組合의 關係는 Georg Flatow교수에 의하면 애당초 勞使協議會와 勞動組合사이에는 묘한 暗鬪같은 것이 없지 않았으나 어느 경우이든 勞動組合은 새로 탄생한 勞使協議會에 대

(72) Arthur Nikisch, Arbeitsrecht, 3B, 2 Aufl. 1966, S. 22. 韓正鉉, 勞使協議會의 本質, 朴德培교수고회논문집 1979, p. 43.

(73) Arthur Nikisch, 前掲書, S. 23. 韓正鉉, 前掲論文 p. 44.

(74) Erich Frey, Die betriebliche Verfassung in der Sicht der staatlichen Verfassung, Betrieb, 1962, S. 738. 韓正鉉, 前掲論文 p. 45.

(75) 이 주장은 Weimar 時代의 Jacobi의 著書 S. 3에서 밝히고 있고, Nipperdey의 前掲勞動法에서 그리고 S. 691 Rudolf Strasser DRdA (örster.) S. 304도 같은 취지임(Nikisch 前掲書, S. 24) 상세한 것은 韓正鉉 前掲論文 參照할 것

(76) 이에 대하여는 韓正鉉, 勞使協議會의 本質, 朴德培교수 고회논문집 p. 46이하를 인용함.

하여 강한 保護監督의 地位에 있다고 생각했다.⁽⁷⁷⁾ 그러나 勞使協議會가 하나의 必要性에 따라 구성되어온만큼, 그것을 勞動組合의 追從者로서 取扱하고 나아가서는 企業에 있어서 勞動組合의 組合員과 地域的 勞動組合指導部사이의 하나의 連結體로서 구축하고 또 勞動組合의 信任者를 그곳에 派遣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의 虛像이 아닐 수 없다.⁽⁷⁸⁾ 어쨌든 1920年の 獨逸勞使協議會法은 그들 組合員의 利益을 代表할 組合資格이 法律規定에 起因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단순히 提訴할 수 있다는 것을 明確히 했고(同法 第8條) 勞動組合에는 그외에 一定한 條件下에 審議權을 가지고 勞使協議會의 會議에 參席할 權利를 부여하는데 그쳤다(同法 第31條 및 第47條). 勞動組合은 勞使協議會에 어떠한 權限도 할애하지 않았으며 勞使協議會는 원래 從業員團(Belegschaft)의 保護를 위해서만 存在할 뿐 勤勞條件에 대한 協約的 規制(tarifvertraglichen Regelung der Arbeit sbedingungen)는 언제나 組織勤勞者가 맡는다는 것을 明白히 하여왔던 것이다.⁽⁷⁹⁾ 現行西獨經營組織法도 勞使協議會에 대한 勞動組合의 地位는 역시 變함이 없고 오히려 協約政策의 企業接近의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企業에 있어서 經營協定은 共同決定의 問題로 勞動組合은 協約自治의 問題를 담당한다는 것이 대개의 주장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勞動組合의 勞使協議會에 대한 干與는 여전한 바, 첫째, 團體協約은 이미 經營組織法上的 諸問題에 대한 團體協約的, 기타 規範的 統制를 許容하고 있다. 그러나 法原則上 團體協約이 후에 제정된 經營代表制의 規定과 어긋날 수는 없다는 點에서는 團體協約이 無限定한 拘束力을 갖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우기 職員代表制에 있어서는 團體協約上的 規制는 완전히 排除되고 있다. 또한 私企業에 있어서도 經營組織法의 具體的 組織規定은 強行的이며 例外規定이 없는 限 團體協約에 대해서도 不可變의이다. 다만 團體協約을 통한 勞使協議會에의 參與權이 法을 넘어서 어느정도 擴大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立法政策의 問題라 하겠다. 둘째, 經營協議會의 選舉에 대한 勞動組合의 干與인 바, 그 企業에 있어서 選舉權이 있는 者, 그 企業에 있어서 代表權이 있는 勞動組合은 選舉權 被選舉權 및 選舉節次에 관한 違反이 있을 때 그리고 그 違反이 是正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 勞動者裁判所에 대하여 勞使協議會選舉의 取消를 訴求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選舉權인 勤勞者 4分の 1이상, 使用者 또는 그 企業에서 代表權이 있는 勞動組合은 經營協議會의 증대한 不正 내지 法律違反으로 職務를 懈怠하였음을 안 때에는 勞動裁判所에 要請하여 어떤 委員을 經營協議會로부터 解免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經營協議會를 解散시킬 수도 있다. 셋째, 勞使協議會法이 制定되면 그에 따를 것이나 一般的으로 勞動組合이 勞使協議會에 參與하는 경우 審議權(beratender Stimme)만 가진다. 또 使用者의 경우

(77) Kommentare zum Betriebsrätegesetz vom 4. Feb. 1920 von Flatow und Kahn-Freund 13. Aufl. 1931.

(78) Erich Bührig, Handbuch der Betriebsverfassung, 1953.

(79) Nikisch, Arbeitsrecht 3B, 2. Aufl. 1966, S. 28이하

는 施設管理에 대한 것 이외에는 發言權을 가질 수 없다.⁽⁸⁰⁾

이와 같이 勞動組合이 勞使協議會에 干與하고 保護者的 位置에 있는것은 단순히 하나의 沿革的 歸結이며 어떤 論理的 歸結은 아니다. 따라서 工場새마을運動은 勞動組合의 후견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나 비조직회사인 경우 노사협의회만으로도 족하다 하겠다.

5) 勞使協議會法の 立法모델

工場새마을運動이 參加的 勞使協議會를 주축으로 하여 推進된다고 한다면 그 立法은 우리 實情에 맞는 勞使協議體를 構想해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近代産業革命過程은 나라를 초월하여 대개 똑같은 社會問題를 發生시키고 있다는 點에서 우리는 外國의 立法例를 살펴볼 必要를 느끼게 된다. 勞使協議制로서 代表的인 것으로는 英國, 獨逸, 프랑스를 들 수 있는 바 이하에서 각각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勞使協議會立法에 參考로 삼고자 한다.

가) 英 國

1914년이후 슈·스튜아드의 委員會가 非公式的으로 個別工場에 設置되어 苦情, 내지 勤勞條件을 協議하기 시작했다. 그후 1916年 휘트리委員會가 勞使關係의 諮問機關으로서 생겨나 이 機構의 勸告의결에 따라 合同産業協議會(Joint Industrial Councils)가 勞使를 中心으로 全國的 組織으로 나타났다. 이 協議會는 政府機關에도 設置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目的은 「産業의 平和와 能率」의 촉진에 있었다. 이 協議會는 地域協議會도 권고했으나 큰 發展은 못보았다. 그다음 工場委員會에 의한 勞使協議制를 들 수 있는 바 이 委員會는 個個使用者에 의해 1920年代初에 設置되었다.⁽⁸¹⁾

英國에 있어서 勞使協議의 議題는 統一의인 것이 아니고 力關係에 따라 다르다. 다만 一般的으로 議題의 共通點을 들면 ① 提案制度를 포함한 生産能率의 向上 ② 經營者에 의한 政策·生産計劃 등의 說明 ③ 勤勞時間의 配置 및 賃金支拂制度 ④ 懲戒問題 및 就業規則의 作成·變更 ⑤ 苦情處理 ⑥ 教育訓練 ⑦ 年少者의 福祉 ⑧ 安全·衛生 ⑨ 福祉基金의 運營 ⑩ 리크리에이션 ⑪ 勤勞時間의 合理的規制 및 産業災害統計檢討 ⑫ 기타 勤勞者의 意見表明 등으로 되어 있다. 英國에 있어서 勞動組合은 交渉事項, 勞使協議會는 協議事項을 다루며 勞動組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勞使協議會는 주로 現場中心으로 生産協力, 勞動福祉, 産業安全 등에 힘쓰고 있다.

組織을 보면 中央레벨로서는 工場協議會(Works Council), 發展協議會(Development Council), 工場委員會(Works Committee), 政策委員會(Policy Committee), 生産委員會(Production Committee), 經營勸告委員會(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등이 있고 地域레벨로서는 事業部生産委員會, 職場委員會(Shop Committee), 職場會議(Shop Meeting) 地域委員會(Area Committee) 등이 있으며 現場레벨로서는 課會議(Section Meeting), 職場委員會

(80) 韓正鉉, 勞使協議會의 本質, 朴德培교수 古稀記念論文集 1979. 7. p. 46참조

(81) Roger W. Rideout, Principles of Labor Law, 1976, p. 19 이하

(Shop Committee), 職場會議(Shop Meeting), 그룹會議(Group Meeting) 등이 있다.

나) 西 獨

西獨은 勞組의 組織이 典型的인 產別組織으로 되어 있어 企業內勞使協議制가 體系化되어 있다. 또한 勞動組合政策도 產業레벨에서 企業投合政策으로 기울고 있다.

西獨에 있어서 勞使協議會組織을 보면 第1次大戰後 勞使休戰體制의 一環으로 從業員代表制(Personnelrat)가 생겨나 주로 官公勞에 있어서 共產主義細胞組織을 排除하는 데 공헌했고 오늘날도 官·公勞에 組織된 勞使協議制의 한 形態로서 存續하고 있다. 이외에 經營協議會를 들 수 있는 바, 이 制度는 1919年 7月 뉴른베르그大會에서 勞使協議制의 中央組織의 強化와 함께 새로운 經營協議會制를 제창하여 1920年の Weimar經營協議會法을 탄생시켰다.

第2次大戰後 1949年 10月 민헌綱領은 한편으로 基幹產業의 社會化(公有化)의 要求와 함께 다른 한편 資本主義 經濟生活의 民主化의 徹底, 이를 위한 企業內共同決定을 제창하게 되어 1951年の 鐵鋼·石炭共同決定法(1951年 5月 21日), 1952年の 一般經營組織法(1952年 10月 11日) 및 1955年の 職員代表法(1955年 8月 5日)이 成立하게 되었다.⁽⁸²⁾

특히 우리나라 工場새마을運動의 推進體로서 가장 參考할 만한 經營組織法은 1972年 大幅改正되었는데 이 法은 ① 企業內 勞使關係의 모든 面에 걸쳐 經營協議會의 權限 즉 共同決定의 對象事項을 이전보다 擴大했는 바, 企業職業訓練 내지 訓練施設에 관하여 詳細한 規定(第96條·第98條)을 두었고 災害防止에 관한 共同決定權이 擴大되고 安全衛生委員會에 經營協議會構成員의 出席(第89條 3項), 生産過程의 變更·新技術의 導入등의 경우 經營協議會에의 通告·協議(第90條·第91條), 經濟委員會의 強制設置主義의 採擇(第106條·第107條), 企業의 縮少·閉鎖·合併등에 있어서 經營協議會의 協議權限의 強化가 確保되었다.⁽⁸³⁾ ② 經營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을 強化하고 年少勤勞者代表制에 대하여 獨立的 保障規定을 새로이 設定했다. 원래 西獨에서는 經營組織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經營協議會不存在企業 혹은 定數에 未達하는 經營協議會가 存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問題는 法的 保障을 通하여 解決하는 것이 보다 效果의이라고 보았는데 勞使協議를 積極化하기 위해서는 經營協議會 멤버가 必要한 知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하기 때문에 이들 멤버의 知的 活動을 위한 充分한 時間을 할애하고 專任멤버를 人數에 따라 調整強化했다(第37條·第38條). ③ 勞動組合의 經營協議會의 構成·運營에 대한 支援活動을 強化했다. 즉 西獨에 있어서 經營協議會는 아직 그 本軌道에 올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뒷바침하기 위하여 勞動組合의 強力한 後援을 보장했다. 즉 新法은 1920年 혹은 1952年法의 分離主義를 떠나서 關與權을 強化한 것이다. 따라서 勞動組合의 專任者는 마음대로 工場에 出入經營協議會를 後援하게 되었다(第2條 2項). ④ 絶對的 經營平和主義原則을 後퇴시켰다. 즉 舊法은 經營協議

(82) 金致善, 西獨의 經營組織法, 서울大學校「法學」(1977.6) 18권 1호 p.381.

(83) 金致善, 前揭資料 참조.

會에 經營平和義務를 課한 바 있으나 이러한 原則은 時代錯誤의인 干渉이라고 하여 삭제하고 그 表現을 부드럽게 했다(第74條). 다만 政治的 論議는 어느정도 제한 받는 것은 종전과 같다(第74條 2項). ⑤ 個別勤勞者의 異議申請權 및 提案權등을 保障했다. 즉 新經營組織法은 第81條 내지 第86條에서 勤勞條件과 就業條件등에 대하여 個別勤勞者가 異議申請이나 提案權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使用者의 通知·說明義務등을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經營協議會 멤버의 關與權을 保障하기에 이르렀다. ⑥ 新法은 經營協定の 法的 效力에 관한 規定을 整備하고 특히 그의 餘後效를 確保했다. 즉 舊法에서는 經營協定の 效力에 관한 明白한 規定이 없었고, 따라서 判例·學說이 이를 메꾸어 왔으나 新法은 이를 團體協約과 거의 맞먹는 經營協定の 餘後效條項(第77條 6項)을 두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經營協定은 3個月의 豫告期間을 두지 않는 限 一方的으로 解約할 수 없다고 規定하게 되었다(第77條 5項). ⑦ 끝으로 新法은 BGB 第613條 a項을 新設하여 企業 혹은 企業一部讓渡의 경우 勤勞者의 同意나 抗辯權에 관계 없이 勤勞關係가 自動적으로 移轉되도록 配慮하고 있다.⁽⁸⁴⁾

다) 프랑스

프랑스의 勞使協議制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零細企業에 適用되는 從業員代表制(délégué du personnel)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大企業·公共企業에 適用되는 企業委員會(comité d'entreprise)이다.⁽⁸⁵⁾ 兩制度는 모두 商·工業, 公共·政府機關, 自由專門職, 組合, 協會등에 適用된다. 특히 1966年 6月 18日의 法이래 企業委員會는 商·工業의 區別없이 義務적으로 設置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最近에 이르러서는 本社를 海外에 두고 있는 企業體가 프랑스內에 事業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企業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고 있다.

從業員代表制는 通常 10名이상의 從業員을 거느리는 事業場에서 選舉에 의하여 設置되며 代表의 數는 從業員 10名에서 25名까지 1名의 代表(titulaire)와 補闕代表(suppléant)를 두기로 되어 있으나 500名에서 1,000名까지는 적어도 9名까지의 代表와 補闕代表를 두어야 하며 그 이상은 500名마다 1名의 代表와 補闕代表를 누진적으로 加算하여 選出한다.

企業委員會는 50名이상의 從業員을 거느리는 事業場에 設置하게 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 基準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委員會의 數는 1975年현재 約 1萬個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企業委員會에 있어서 代表數는 從業員 50名에 3名이고, 1萬名까지는 11名이내의 代表와 補闕代表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法에서 定한 數보다 높게 選出委員數를 두는 것은 1名이내에 限하여 合法이란 法條文이 나와 있다.⁽⁸⁶⁾ 또한 實際 人員의 計算에 있

(84) 西獨의 1972年 新經營組織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金致善, 西獨의 經營組織法, 서울大學校「法學」18권 1號(1977.6)를 참조하기 바람. 또 李英俊, 西獨에 있어서의 勞使關係(上), 서울대학교「社會科學과 政策研究」創刊號, (1979.8), p.215 참조할 것.

(85) G.H. Camerlynck/Gérard Lyon-Caen, Droit du travail (1975) 7^{éd.} p.373이하.

(86) 프랑스 勞動法典 第433條 12項

어서 法律은 勤勞者의 職業, 從弟·家事使用人·代理등에 關係없이 通常企業에 從事하는 모든 勤勞者를 포함하지만 다만 臨時 내지 季節勤勞者는 除外하고 있다.

會社그룹에 있어서 企業主는 法에 拘束됨이 없이 스스로 혹은 勞動組合과 締結한 團體協定에 따라 從業員代表制나 企業委員會를 設置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社會的 代表機構의 회피나 變容은 勞動關係法에 따라 제재를 받음은 물론이다.

한편 公共企業에는 1968年 12月 27日의 法이 있어 勤勞者의 經營參加가 擴大되고 있고 조직에 있어서는 勞使間의 協定이 命令이나 法律에 우선한다.

從業員代表制의 任務는 단순한 勤勞者代辦人的 役割뿐 아니라 自治協定 이외에 使用者, 勤勞監督官, 企業委員會, 勞動組合 및 事業場內의 諸人事와의 사이에 수립할 수 있는 諸事項을 포함하여 協議한다.

한편 企業委員會는 使用者, 勞動組合, 從業代表(composition tripartite)로 構成되며 使用者와 그의 代理人이 當然議長이 되고 事務長은 委員중에서 뽑는다. 이 경우 使用者는 다만 從業員委員들을 相對하여 준다는 것 외에는 別影響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會議는 每月 적어도 一回 開催(中央委員會는 每分期마다 一回)하고 召集은 使用者가 行하며 不履行의 경우 勤勞監督官이 이를 強行한다. 委員會는 각종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고 企業所屬專門家나 技術者들을 企業밖에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어 活用할 수 있다.

企業委員會의 社會的 내지 經濟的 機能은 단순히 諮問的인(purement consultatives) 次元에 머무르나 이 任務遂行을 위한 企業委員會 委員들의 地位保障은 強力히 確保되어 있다. 특히 株式會社의 경우 勤勞者들이 情報에 대한 權利(le droit à l'information)는 완전히 享有되고 있다. 즉 株式會社는 株主總會에 提出하기 전에 損益計算書(compte profits et pertes), 貸借對照表(bilan annuel) 그리고 監查報告書(rapport des commissaires aux comptes) 기타 總會報告補助書類를 企業委員會에 提出해야 하며, 委員會는 會計監查役을 召喚할 權利, 특히 그들의 書類 즉 企業의 財政狀況에 대한 說明을 들을 權利 등이 부여되어 있다. 委員會는 株式會社의 總會와 交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株式會社最高機關의 說明을 들을 權利가 있다. 또 一般會社經費의 明細書를 要求할 수도 있다.⁽⁸⁷⁾

企業委員會는 이 경우 會計帳簿의 記載가 企業委員會의 處地에서 難解한 文句(un langage hermétique)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法은 委員會가 企業所在地管轄高等 法院(la Cour d'appel du siège de l'entreprise)에 호소하여 資格있는 會計專門家の 도움을 받을 權利(Droit à l'assistance d'un expert comptable)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使用者는 그 費用을 負擔한다.⁽⁸⁸⁾ 이때 會計專門家は 商法典 第8條에 의하여 會社의 會計帳簿를 열람할 수 있다.

(87) Cass. comm. 9 février 1954, D. 1954, 241; Lyon-Caen, Droit ouvrier 1971, n°1: le comité d'entreprise et le bilan.

(88) Trib. seine 28 déc 1958, D. 1959, 84, 상세한 것은 Pirolli, Droit ouvrier, jan. 1960.

또한 株式會社의 理事會에 企業委員會代表가 不參한 경우 그 會議은 有效하게 成立할 수 없다는 判例가 나와 있기도 하다.⁽⁸⁹⁾

2. 協同組合法

1) 沿 革

工場새마을運動은 勞使協議會와 함께 協同組合이 주요기관이 되어야 한다. 協同組合은 小商品生産者나 勤勞者가 그의 經濟的 虛弱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協同的인 經濟活動으로 資本主義經濟에 適應하여 나아가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이다. 그것은 勤勞者의 利益을 目標로 하는 消費組合(sociétés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과 生産者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生産組合 및 信用組合 등이 있는 바, 특히 消費組合은 英國에서 1844年 롯치데일의 開拓者가 시작한 生活物資의 小賣組合을 先驅로 한다. 그것이 成功한 이후 消費組合은 英國을 위시하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美國 등에 널리 普及되고 小賣組合의 全國的인 聯合體로 整備되어 갔다. 生産組合으로는 19世紀中葉이후 독일의 Schulze, Raiffeisen에 의하여 開拓된 手工業者, 農民의 信用組合이나 講買組合이 유명하다. 販賣·加工·利用을 위한 각종 生産組合도 前世紀를 通하여 독일, 덴마크, 美國에서 發展해 왔다. 우리나라의 協同組合運動은 1920年 5月 15日의 木浦消費組合이 효시를 이루며 全國의 規模로서는 朝鮮勞動共濟會 산하의 消費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消費組合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經濟的 弱者의 補整策으로서만 活用될 수 있다는 限界가 있음은 注意해야 한다.⁽⁹⁰⁾

2) 各國의 協同組合

가) 英 國

英國에 있어서 協同組合運動은 當初 로버트·오웬에 의하여 創導되었으나 그것이 資本主義의 革罷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英國의 有名한 社會經濟學者이며 勞動黨創黨의 멤버였던 Webb 夫妻(Webb, 1859~1947 및 Beatrice, 1858~1943)는 그후 오웬의 貴重한 社會主義論 중에서 그의 協同組合論은 가장 實踐하기 어려운 나쁜 理論이라고 날카롭게 비난을 加한 바 있다. 웹夫妻는 商去來에 있어서 協同的 共同生産者로서 勤勞者의 團結이 競爭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은 株式會社로서의 모든 雇傭主들이 商去來에서 競爭을 排除할 수 없는 것과 꼭 같은 것으로 도저히 있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그와 같은 組合이 있다고 하면 資本家의 企業에 埋沒당하고 말며 그 計劃은 社會主義的인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오웬類의 協同組合運動은 좌절되고 勞動組合이나 協同組合의 政治的 色彩를 不

(89) Paris 24 Oct. 1960, D. 1991, 97, note Dalsace; 9 mai 1973(이 判決에서는 從業員代表가 不參할 경우 理事會는 개최할 수 없으며 그가 參席할 때까지 延期된다는 것이었다)

(90) 協同組合을 통한 社會改良主義者들로서는 英國의 Owen, 프랑스의 상서몽, 프리에, 블랑, 뷔세 독일의 Lassalle등이 있고 또 共產主義체제에서는 朝鮮의 팔호스, 中共의 人民公社 등의 조직체가 있으며 後者는 모두 企業家를 배제하려고 하는데서 自由主義社會의 그것과 구별된다.

贊하고 自助·協同·勤勉을 中心으로 한 순수한 協同組合運動을 생각한 윌리엄·킹博士(1786~1885)가 이끄는 1844년의 로치데일 公正開拓者組合(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의 創設을 보게 되었다. 그후 이 로치데일開拓者組合은 勤勞者들 사이에 自助·協同·勤勉을 모토로 하여 發展되어 오고 있는 바 1964年末에는 組合員 44,100名을 維持하고 있다. 英國의 初期協同組合이나 로치데일公正開拓者組合은 慈善組合이나 勞動組合과 같은 任意組合으로서 組織되었으나 1846년에 友愛組合法이 制定되었고 이 法은 다시 1852年 産業 및 貯蓄組合法으로 代替되어 오늘날까지 協同組合法으로서 有效하다.

오늘날 英國에서는 과거처럼 勞動組合이 직접적으로 協同組合事業을 한다거나 또는 協同組合이 組合單位로 직접 勞動組合을 設置하는 것이 아니고 法的으로 組織과 事業이 分離되어 있다. 그러나 勤勞者들은 生産活動面에서는 法的으로 거의 勞動組合에 加入하여 있고 家計消費面에서는 대개 自發적으로 消費組合에 加入되어 있다. 이러한 職業組合은 비록 그 규모는 보잘것 없지만 勤勞者들의 社會的 不滿解消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되어 있음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⁹¹⁾

나) 獨 逸

獨逸에 있어서 協同組合은 貧困狀態에 있던 小農民이나 都市의 中小手工業者 및 勤勞들의 高利債의 重壓으로부터의 救濟에서 비롯된 것이다. 獨逸協同組合의 先驅者로서는 Schulze (1808~1883)를 들 수 있다. 그는 當時 독일 中產階級을 代表하는 小市民的 自由主義者로서 手工業者의 救濟에 總力を 기울였다. 政府의 힘만으로는 手工業者의 救濟가 不可能함을 깨닫고 自助·自力的인 協同組合이야말로 그들이 向上될 수 있다고 믿고 1849年 덴취市의 木工과 靴工을 위하여 原料講買組合을 設立하고 또 原料의 共同講入만으로는 手工業者의 困難을 打開할 수 없음을 깨닫고 1850년에 講買資金을 前貸하는 貸付協同組合을 조직케 함으로써 現代都市信用協同組合과 協同銀行의 嚆矢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또 個個信用組合이 發展하려면 資金流通을 目的으로 하는 中央金庫와 對內외의 弘報活動을 하는 聯合體가 必要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方面에도 힘썼다. 그는 한편 協同組合法의 制定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政府는 協同組合의 權利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고 拒絕하는 바람에 고생하다가 獨逸統一政府가 樹立되자 帝國議會가 그의 協同組合法을 直時 通過시켰던 것이다.

그는 協同組合觀에 대하여 「協同組合의 原則은 모든 人間에 대해서 利益이 있는 일을 保障하는 것이며, 이 點은 社會主義와 共通된다. 兩者가 다같이 社會連帶主義의 基礎위에 이 保障을 行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方法은 다르다. 社會主義는 社會全體의 立場에서 國家社會의 立場에서 이 保障을 行하려 하고 이 目的을 위하여 새로운 社會秩序 즉 社會의 再

(91) Helmut Faust, 農協刊行物製作所譯, 協同組合運動의 先驅者들, 1868 참조.

(92) 金榮鎬 編, 勞動組合의 協同組合事業 (1971), p. 19.

組織을 要求하는데 反하여, 協同組合은 이러한 問題를 안고 있는 前提를 實現함으로써가 아니라 現存社會에서 發見되는 能力的要素의 發展에 의하여 이 保障을 期하려는 것이다. 즉 協同組合은 그 組合員에 대해서 “1人是 萬人을 위해서, 萬人은 1人을 위해서”(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r)의 原則을 組合에 導入하므로써 組合員의 生存에 必要한 利益保障을 相互의 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⁹²⁾ 라고 말함으로써 獨逸協同組合뿐 아니라 各國의 協同組合에 理論的 基礎를 提供했다. 그후 獨逸의 消費協同組合의 發展에는 Heinrich Kaufmann(1864~1928)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勤勞者들의 참혹한 生活을 보고 協同組合運動에 뛰어들었다가 新進과 保守의 싸움에 휘말려 고생했으나 1903年 5月 585個의 消費組合을 再整備하여 獨逸消費組合中央聯合會를 結成하고 카우프만은 새 聯合會에서 활약하게 되고 그의 指導아래 消費協同組合運動의 새로운 歷史를 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⁹³⁾ 獨逸은 協同組合運動이 中小自營業者를 中心으로 한 生産協同組合과 勤勞者를 中心으로 消費協同組合의 二大陣營이 서로 경쟁하여 發展하였으나 勤勞者들의 消費組合運動은 社會變革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中小自營業者(中産層)들이 이를 경원하게 됨으로써 좌절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消費組合은 獨占資本體制下에서 어디까지나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이란 補整的 役割이외에는 存立하기 어렵다는 教訓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다) 이스라엘

英國이나 기타 先進國에 있어서는 勞動組合과 消費組合은 法的으로나 實踐的으로나 分離되어 각각 獨自的 目的과 方法에 의하여 發展하면서 兩者가 깊이 協助關係에 있었던데 비하여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兩者가 직접적으로 有機的 關聯을 가지고 發展하고 있다. 周知하다시피, 지난 30年間 이스라엘의 눈부신 社會·經濟的 發展은 히스타드루트(Histadrut)라고 불리는 勞動協同運動에 있었다. 이것은 勞動組合과 協同組合을 합친 舉國的 聯合體로서 오늘날 農村과 都市, 男子와 女子, 古參勤勞者와 見習勤勞者를 막론하고 이에 대부분 加入하는 自律的 協同勞動組織이다.⁽⁹⁴⁾ 히스타드루트運動은 하나의 人間開造運動으로서 1920年 파레스타인 英國統治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히스타드루트는 移住民을 한데 모아 그들의 過去를 버리고 새로운 勇氣와 信念을 불어넣어줌으로써 生産的인 勤勞者가 되게 하고 동시에 民主的인 勞動組織의 傳統을 만들어 왔다.

히스타드루트의 事業은 4大種類가 있는 바, ① 教育事業, ② 經濟的 協同事業, ③ 勞動組合事業, ④ 共濟事業이다. 하나의 總機關 밑에 네가지의 相互獨立的인 事業組織을 갖게 됨으로써 相互有機的으로 人間勞動을 效率的으로 發展케 하고 있다.

(93) 金榮鎬, 前掲書, p. 29.

(94) 현재 加入者數는 人口의 절반인 60萬名이나 된다.

히스타드루트는 1920年 12月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創設總會를 열었다. 4,433名의 組織員을 代表해서 87名의 代議員이 參席했고 初代事務總長에는 16年間이나 新生이스라엘共和國의 首相을 지낸 바 있는 데이비드·벤구리온(David Ben Gourion)을 選出하고 4大基本原則을 定했다. 이 機構는 1923年 1月 第2次總會에서 同機構內에 協同組合經濟의 組織을 만들어 農業發展을 도모할 것을 決議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協同農場이다. 1927年 第3次會議에서는 青年勞動 및 婦女勤勞者의 社會的 位置確立을 선언했다. 1933年 第4次總會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大虐殺에 대한 對策과 全體組合員의 聯合軍側에의 加擔을 決議했다. 1949年의 第7次總會에서는 同族移民吸收策을 論議했다.

이 機構의 特徵은 熾烈한 論爭과 多數意見의 支配이며 繼續的인 經濟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組織의 方法을 講究하는 데 있다.

히스타드루트의 定款에 의하면 「18才이상의 男女로서 他人을 榨取하지 않고 自己勞動力에 의한 收入에서 生計를 維持하는 者」로서 同組織의 規定을 遵守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組合員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⁹⁵⁾ 이는 아랍諸國사이에서 國民總和를 協同團結에 의하여 이룩하면서 그들의 生存을 지키려는 歷史的·友愛的인 動機에서 나온 것 같다. 또 여기에는 世界各國에 퍼져 살면서 얻은 經驗을 압축하여 그들의 獨特한 共和國을 建設하려는 意圖가 엿보인다. 이들의 主要事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勞動組合活動, 勞動經濟活動(經濟的 協同事業), 勤勞者協同組合, 히스타드루트協同農業, 相互扶助·福祉活動 등으로 되어 있다.

라) 日 本

日本은 戰後 協同組合이 立法이나 政府補助金을 通하여 育成되고 있다. 日本에는 農業協同組合·漁業協同組合·中小企業協同組合 등이 法の 保護下에 育成되고 있고 현재 勞動組合의 支配下에 있는 것은 消費組合과 勞動銀行이다. 勞動銀行은 勞動組合員의 信用協同組合에 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勤勞者는 中小商人들과 더불어 都市信用協同組合과 信用金庫에 加入하고 있다.

勤勞者는 生産者인 동시에 消費者이다. 그들의 生産活動에서 얻은 賃金은 家庭의 消費活動에서 支出된다. 만약 賃金引上에 뒤따라 生活物資價格이 올라가면 實質的으로 賃金引上의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勤勞者의 生活水準 向上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일찍이 生産者로서의 地位向上을 도모하는 한편 消費者로서 消費協同組合을 조직하는 有利性을 깨닫고 戰後 다시 勤勞者福祉政策協會를 조직하여 그 밑에 消費協同組合·信用協同組合·保險協同組合·住宅協同組合 등 많은 協同組合事業을 行하고 있다. 이러한 發展은 戰後 政府의 行政力微弱을 國民들 自身들이 獨自的으로 메꾸어 나가려는데서 이룩된 것이다.

(95) 金榮鎬, 前掲書, p. 34.

오늘날 日本內에서 가장 큰 나다코베消費協同組合은 20萬名이상의 組合員에 300億圓의 物品을 供給하는 맘모스組合으로 西獨의 합부르크 生産消費協同組合과 비슷하다. 組合員婦人들이 組合活動에 매우 열성적이고 能한 바 유럽의 諸國에서는 組合婦人會活動이 消費組合發展의 中樞를 이룬다. 日本에서도 나다코베消費組合, 鶴岡消費協同組合, 루쿠시마쇼이消費協同組合 등 3大組合을 비롯하여 여러 組合을 한 組合이 地區內의 要所마다 組合商店을 가지는데 각 店舖單位로 家庭 그룹을 形成시키고 組合本部에는 中央審議會를 두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組合員當去來高는 西歐諸國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 弱點으로 되어 있다.⁽⁹⁶⁾

	組 合 數	組 合 員 數(千)	年 間 賣 上 高(10 億)
英 國	667	13,065	1,107
프 랑 스	428	3,552	319
西 獨	192	2,455	371
瑞 典	197	1,355	385
日 本	1,717	10,906	171

이외에 信用協同組合에는 勞動銀行·信用金庫등이 있어 物價上昇에 不安한 勤勞者生計를 돌보는데 一助를 하고 있다.

3. 勤勞者側의 立法建議

1979年 9月 韓國勞總은 勞使協議와 勤勞者生活安定의 對策으로서 勞使協議法의 制定과 勤勞者協同組合法의 制定을 建議한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⁹⁷⁾

1) 勞使協議會法制定建議

勞總의 建議는 크게 協議事項, 構成으로 나누어 진다.

協議事項은 事業場單位的 勞使紛糾處理, 生産計劃, 作業工程, 事業變更·移轉·合併, 作業時間, 重要勤勞者事項에 대한 經營參加, 教育 및 作業環境에 관한 事項, 福祉(共濟組合, 消費組合, 새마을運動), 人事 및 不滿處理에 관한 事項, 기타 賃金の 支拂方法 및 成果給制度에 관한 事項으로 되어 있다.

構成은 勞使同數로서 從業員의 數에 따라 5~10名으로 하되 組織事業場은 勞組總會나 代議員大會에서 選出하고 非組織事業場에서는 從業員이 직접 選出하도록 하고, 勞使協議會의 레벨은 30人 이상을 고용하는 事業場勞使協議會, 수개의 事業場으로 構成되는 企業單位勞使協議會, 地域單位的 業種別勞使協議會, 全國의 規模의 中央勞使協議會로 하도록 하고 있다.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나누어 定期會議는 每 3個月에 1回, 臨時會議는 勞使一方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하여 議決은 勞使 各 過半數出席으로 成立, 出席委員 過半數로

(96) 金榮鎰, 前揭書, p. 46.

(97) 韓國勞總, 建議書, 197.98.28字 참조.

決議하되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次期會議에서 再審議하도록 하고 있다.

2) 勤勞者協同組合法 制定建議

현재 勞總傘下 각 支部, 分會에 信用協同組合, 共濟組合, 새마을金庫, 職場金庫, 金庫事業相助會, 共濟會등이 多樣하게 普及되고 있는 바, 勞總은 이들을 合法的으로 育成하여 勤勞者의 自立生活의 基盤을 構築할 수 있도록 하여 즐거움을 建議하고 있는 바, 그 內容은 協同組合運動을 通하여 새마을運動의 基本理念인 勤勉·自助·協同精神을 最大限 發揮하기 위하여 主要事業으로서 ① 저축을 장려 預金과 積金 吸收 ② 勤勞者에 必要한 教育, 住宅 및 生業資金 등의 融資 등을 들고 있으며, 購賣事業으로서 生必品을 값싸게 購入하여 勤勞者에게 實費로 供給, 이외에 附隨事業으로서는 債務保證, 財政保證 기타 公共料金 收納業務 등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基金助成으로서는 勤勞者側 出資 60%, 政府出資 40%로 할 것을 建議하고 있다.

設置單位로서는 事業場單位組合과 地域單位組合으로 하되 小規模事業場은 複數로 共同設置 또는 地域組合에 加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立法은 農業協同組合法에 準한 것으로하고 있다.

Ⅵ. 立法建議

工場새마을運動은 勞使協議會와 여러가지 協同組合이 그 主軸이 되어야 하며 勞使協議會는 勤勞者들이 經營參加事業場에서의 不滿處理 그리고 生産合理化등에 이바지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하고 協同組合은 國家의 行政力이 미치지 못하는 分野에 있어서 그의 補助的 役割로서 國家의 財政的 支援下에 生産, 協同, 信用에 의한 自力的인 生活安定에 力點을 두도록 해야한다. 여기서는 勞使協議會와 協同組合法의 立法에 관하여서만 建議한다.

첫째, 勞使協議會는 國·公營大企業에 있어서의 企業委員會와 一般企業의 勞使協議會(勤勞者代表制)로 二元化할 것을 권고한다. 國策企業은 社會政策的인 面에 있어서나 企業運營에 있어서 國家의 介入이 不可避하고 이러한 事業體에 있어서 勞使問題는 西獨의 共同決定法, 프랑스의 企業委員會, 그리고 英國의 휘트리委員會式으로 理事會에 있어서 勞務理事를 두고 監事會에 共同決定權을 導入하여 勤勞關係를 制度化해야 한다. 이런 大國策企業에 있어서 共同決定制는 사실상 勤勞者代表가 國策企業指導部와 共同決定하여 일하는 것이 수월하고 또 그만큼 勞動問題를 制度的으로 解決할 수 있기 때문에 長點이 있다.

둘째, 一般企業에 있어서 勞使協議會(勤勞者代表制)는 經營에 대한 諮問權, 解雇協議權, 苦情處理權, 生産合理化 등을 中心으로 해야 한다.

셋째, 協同組合의 規模를 보다 擴大하여 中小企業程度의 協同生産業體를 運營할 수 있도록하고 協同銀行을 設置할 수 있고 組織도 中央協同組合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財政의 50% 정도는 國庫補助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勞使協議會立法

勞使協議會단에 關하여 본다면 通常 10人 이상의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場에는 勞使協議會의 機構를 選舉에 의하여 構成하되 選舉權·被選舉權을 法律로 定한다. 勞使協議會의 委員數는 勤勞者의 數에 比例하여 定하도록 한다. 選舉規定은 詳細히 규정해야 한다. 勞使協議會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任期中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違反事項은 罰則事項으로 한다. 여기에는 金錢罰을 原則으로 한다.

勞使協議會의 業務執行은 委員長, 副委員長, 常任委員會, 執行委員會의 任務·召集, 開催勞動組合의 傭서버資格, 議決, 業務規則, 勞使協議會委員의 地位, 懇談時間, 經費와 費用의 使用者負擔, 政府則의 傭서버資格등을 規定해야 한다. 이 경우 政府의 傭서버는 原則的으로 勞動政策의 具顯을 위한 傭서버 및 政府의 立場說明·支援事項등을 위한 傭서버에 그친다. 勞使協議會總會에 關한 規定을 두며 이 경우 開催時間과 勤勞時間과의 關係를 規定하고 勞使協議會總會의 審議事項은 勤勞者와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團體協約政策 기타 社會政策·經濟政策에 關한 事項을 取扱하며 政府의 立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경우 總會會長은 使用者代表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랑스). 다만 이 使用者는 勤勞者의 議決自治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審議權만 갖는다.

이외에 勞使中央委員會를 두되 그의 設置要件, 定足數 및 投票에 關한 事項, 管轄事項, 業務執行事項, 政府에 대한 協力·協議事項 등을 規定해야 한다.

또 年少者·婦女 등과 같이 特定그룹의 代表機構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늘날 勞動力이 婦女나 年少者로 構成되는 比率이 점차 높아가고 이들의 社會問題가 점차 대두되는 傾向에 있기 때문에 一定한 그룹代表制를 두는 것은 社會政策上 매우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교도소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大工場에 配置되는 경우 그들 在所者代表의 기구를 마련하여 그들의 고충을 듣고 소화시켜준다면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외에 勞使共同懇談會에 그룹代表를 參加시키는 것도 人間問題와 生産協力を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 勤勞者들의 經營參加에는 의견청취, 諮問, 協議, 同意, 共同決定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經營一般의 경우 意見청취로서 足하나 事業計劃의 變更·移轉등에 있어서는 諮問이나 協議가 必要하고 勤勞者의 解雇나 大量解雇등에는 協議내지 同意까지도 規定해야 한다. 또 이러한 協議중 意見衝突이 있을 때에는 自體內 仲裁節次를 두며 協議內容에 대한 秘密保持義務를 엄격히 規定해야 한다. 이러한 協議內容은 政府에 報告해야 하며 이때 政府는 다만 그것을 勞動政策의 資料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苦情處理는 可及的 事業場內에서 勞使協議會가 經營協定에 따라 처리하도록 規定한다.

勞使協議會는 社會的 事項에 있어서 勞動災害, 勞動福祉, 勞動保護를 다룬다.

社內·外職業教育에 關한 規定을 둔다.

끝으로 罰則規定은 自由刑은 可及的 避하고 罰金刑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公序良俗이나 強行法違反의 事項은 別途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외에 國策企業이나 國共營企業에는 프랑스의 企業委員會나 西獨의 共同決定法 같은 것 을 導入한다면 勞動問題는 쉽게 解決될 수 있다. 西獨에서 오늘날 共同決定에 대한 論議가 많고 또 違憲論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勞動規制에 便利한 點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 둘 必要가 있다.

2. 協同組合法

工場새마을運動의 一環으로 勞使協議會 외에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向上을 도모 하는 自主的 的 組織體로 協同組合을 들 수 있는 바 그 範圍는 매우 廣範하다. 消費協同組合과 信用組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바, 信用組合에는 새마을金庫, 保險協同組合, 住宅協同組合 등 무수히 많이 갈라질 수 있다. 또 모든 信用業務를 통털어서 農業協同組合과 같이 한데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農業協同組合法에 따라 立法하면 될것이다. 勤勞關係에 있어서는 勞動關係法이 대폭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主要事業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勞總의 建議內容이 무난하지만 婦女의 消費協同組合의 運營要領 및 助力에 관한 教育 등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物價上昇과 勤勞者들의 生活保護는 政府의 行政力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獨占形成에서 오는 勤勞生活의 壓迫을 덜고 資本主義經濟社會를 合理的으로 補整해 나간다는 面에 있어서는 그 所任이 重且大하므로 이러한 協同事業을 널리 알리고 政府를 위시한 各界의 支援을 받는 것이 必要하며 協同組合의 立法에는 이러한 事項들이 폭넓게 규정되어야 할것이다. 加入對象은 工場새마을運動에 관련되는 모든 個人이나 團體가 포함되어야 하며 設置單位는 事業場單位組合, 地域單位組合 그리고 最上部에는 全國的 單位의 協同組合聯合會를 두고 主要施策을 勞·使·政이 協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 론

本稿에서는 工場새마을運動의 理念 그 歷史的位置, 現況과 問題點, 工場새마을運動의 共同體的 要素, 法制化方案등에 대하여 詳論하였다. 或者是 工場새마을運動이 하나의 政治的 動機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이의 合法性을 度外視할지 모르고 또 그러한 要素를 全的으로 排除할 수만도 없으나 그 취지는 이를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國民的 教化 내지 協同運動은 歷史적으로 보면 꾸준히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때 그때 執行者들의 잘못으로 自治적으로 發展되지 못하고 物議를 일으켜 애석하게도 中斷되어 왔음도 否認할 수 없다.

또한 工場새마을運動은 下向的인 組織이라고 하여 地域社會運動과 區別하여야 한다는 立場도 있을 수 있으나 원래의 始發이 下向的이지 그 執行自體는 自治的 要因을 多分히 내포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自發的・自治的 要因에 눈을 돌려 이 運動을 계승, 民主的으로 再整立시킬 必要性을 느낀다. 工場새마을運動은 勞動組合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組合과 밀접한 關係를 唯持하면서 作業場에 있어서 人間問題의 解決, 勤勞者生活安定과 向上을 목적으로 하는 福祉活動이니만큼 이를 잘 살려 계승한다면 國民的 團合은 물론 우리의 固有한 自治的 勞使패턴을 期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것은 그것이 좋은 나쁜 우리의 얼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좋은 점은 살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民族史의 正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工場새마을運動은 再整立됨이 바람직하고 協同的・自治的으로 發展시켜 우리의 것으로 가꾸고 간직해서 우리의 存在를 確認해야 할 것이다.